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KINU 연구총서 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인 쇄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가 격 ₩9,000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 임강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KINU 연구총서 ; 09-04)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479-505-1 93340 : ₩9,000

북한 경제[北韓經濟]

320.911-KDC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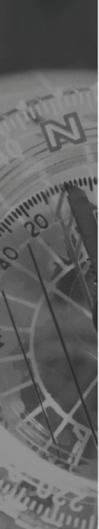
330.95193-DDC21

CIP2009003799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문제 제기	1
II.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시장: 2차경제	7
1. 사회주의에서 시장의 개념과 의미	9
2.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공식경제와 2차경제(시장경제)의 상관관계	19
3. 2차경제의 동태학	29
III. 시장화 현상의 사례 분석	45
1. 쿠바	47
2. 중국	75
IV.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2차경제)의 주요 특징	89
1. 북한에서의 시장화 현상(2차경제)	91
2. 북한경제 시장화 현상의 발전과정	100
3. 부문별 시장의 형성 실태 및 주요 특징	122
4. 국가 공식경제부문의 시장 활용	161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V. 종합 결론: 북한 시장화 현상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	173
1. 북한 시장화 현상의 구조적 특징	175
2. 향후 전망	184
참고문헌	19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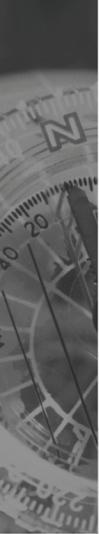


표 목 차

<표 IV-1> 사회주의 국가경제에서 나타나는 시장화 현상의 영역	92
<표 IV-2> 농민시장의 시기별 명칭 및 운영방식 변화	104
<표 IV-3> 장마당의 주요 통제물품 목록	117
<표 IV-4> 국가부문과 비공식부문간의 관계	132

그림 목 차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그림 II-1> 1차경제와 2차경제 사이의 상호관계: 통제와 합법	13
<그림 II-2> 사회주의 공식경제와 2차경제	20
<그림 V-1> 국가의 공식부문과 민간의 비공식부문과의 관계	175
<그림 V-2> 시장을 통한 내각경제, 특권경제, 민간경제의 상호 관계	181

I. 문제 제기



2002년 7월 1일 발표된 ‘경제관리체계 개선조치(7·1조치)’ 이후 북한경제에 시장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부담을 느낀 당국이 2005년부터 시장화 현상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으며, 당국의 시장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2009년 하반기에도 느슨해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과 관련한 북한당국의 정책변화가 북한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민간단체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었으며, 이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의 최근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변화 실태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학문적, 정책적 견해나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변화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주요 변수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 등에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로 발전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한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의 상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

II

III

IV

V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자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부문별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의 시장이 공식적인 계획부문과 어떻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공식경제부문이 수행한 역할과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북한 시장화 현상의 구조적인 성격을 도출해 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그 활동영역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의 계획경제부문과 비공식적인 시장경제부문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양자간의 관계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도 포함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화현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를 억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해 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북한경제과 유사성이 많은 쿠바의 사례와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장에서는 앞장에서의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고 국가의 공식경제부문과 비공식경제부문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맺고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시장을 소비재 상품시장, 노동시장, 생산재시장, 부동산 주택시장,

자본시장으로 구분하여 각자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요 문헌이나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연구와 분석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4장에서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전망할 것이다.

I

II

III

IV

V

Ⅱ.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시장: 2차경제



1. 사회주의에서 시장의 개념과 의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이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경제시스템의 틀 외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종종 공공규제의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러한 종류의 경제활동은 거의 모든 종류의 사회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도 지하경제와 비공식경제가 존재하며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국가규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윤추구를 위한(기업적인) 경제활동을 시장이라고 할 때, 이러한 시장을 설명하는 용어도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시장 관련 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에는, 평행 또는 유사(parallel), 비공식적(informal), 지하(underground), 암(black), 그늘(shadow), 비합법적(illegal), 범죄의(criminal), 제2의(second) 등이 있다.

페레즈-로페즈(Pérez-López)는 문헌 분석을 통해서 ‘규제되지 않은 경제활동’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공식경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¹ 페레즈-로페즈가 제시한 3가지 구분은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2차경제(second econom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비공식경제는 중남미와 같은 개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존을 위한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지하경제는 시장경제에서 발

¹ Jorge F. Pérez-Ló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New Brunswick (U.S.A.) and London (U.K): Transaction Publishers, 1994), pp. 7~13.



생하는 기록되지 않은, 뒷거래(under-the-table)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차경제는 중앙계획경제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적 경제부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페레즈-로페즈는 위 3가지 경제의 개념 각 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성격상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적용되는 2차경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²

가. 2차경제의 개념과 주요 특징

2차경제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적인 계획경제(1차경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받지 않은 경제활동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³

2차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직성을 부분적으로 교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가족·회사 심지어는 국가에 생존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래서 2차경제는 국가 요소와 시장 요소의 결합을 통해서 형성되며, 자본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에 비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요소의 위상이 막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에서 2차경제의 존재는, 사회주의국가의 정치·경제영역으로부터의 탈출과 암묵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적 행동과 발언들은 은밀한 정치적 함의

² *Ibid.*, pp. 10~13.

³ 북한에서는 제2경제를 군수경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제2경제위원회가 군수 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제2경제를 군수경제로 표현함으로써 2차경제라는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정리하고자 한다.

를 지닌 것으로 의심받게 된다는 점에서 2차경제 활동은 경제적 의미 이상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경제체제하에서는 대부분의 2차경제 활동들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때로는 국가가 2차경제 활동을 없애기 위해 매우 가혹한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자주, 국가는 경제자원의 소유주이자 통제자로서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차경제의 존재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로스맨(Grossman)은 구소련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생산과 교환이 직접적인 개인의 이익 때문에 발생하며, 또한 종종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경제활동의 집합”을 2차경제로 규정하였다. 또한 (구소련의) 2차경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활동’과 ‘중요한 측면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경제활동’ 중에서 적어도 한가지를 만족시키는 생산과 교환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그러나 그로스맨의 2차경제에 대한 개념 규정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적인 경제활동, 즉 합법적인 것이나 비합법적인 것을 모두 일괄적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스맨이 사적 이익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을 2차경제의 한 부분으로 포함한 것은, 북한에서처럼 시장화 현상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국가에 의해서 용인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로스맨의 2차경제에 대한 정의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홀즈(Holmes)는 공산정권의 부패에 대한 연구에서 2차경제를 “국가가 극히 ‘최소한의 통제권’을 갖는 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⁵ 여기에서 ‘최소한의 통제’는 가격 결정 및 계획부문과의 통

⁴ 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September-October 1977), p. 25.



합 수준 등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나아가 그는 2차경제를 정당한 (legitimate) 활동과 정당하지 않는(illegitimate)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정당한 활동은 사적 영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과 농업부문의 개인 소토지(plot)에서 비롯된 생산과 같은 합법적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정당하지 않는 활동은 ‘검은 경제(black economy)’와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검은 경제, 즉 암시장은 재화, 화폐, 서비스 등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림자 경제’에서의 활동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당하지 않으며 때로는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나. 2차경제 활동영역의 구분

페레즈-로페즈는 합법성과 불법성, 그리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라는 2가지 기준을 통해서 2차경제의 활동영역을 4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⁶

<그림 II-1>은 공식(계획)경제와 2차경제 활동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세로축은 통제가 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생산된 소득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사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로 분류되었다. 가로축은 활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따라 구분해 놓았다. 4분면 하단 왼쪽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CPE)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4분면을 벗어난 행동들이 전형적으로 2차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⁵- Leslie Holmes, *The End of Communist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 74.

⁶- Jorge F. Pérez-Ló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pp. 14~15.

●그림 II-1 1차경제와 2차경제 사이의 상호관계: 통제와 합법

통제	사적	계획경제 밖에서의 합법적인 2차경제	계획경제 밖에서의 불법적인 2차경제
	공적	계획경제 내에서의 합법적인 2차경제	계획경제 내에서의 불법적인 2차경제
		합법	불법
합법성			

<그림 II-1>에서 ‘계획경제 내에서의 합법적인 2차경제(I 사분면)’는 국영기업 내에서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개인적인 작업반 활동, 북한의 경우를 예를 들면, ‘8·3인민소비품’ 생산활동을 들 수 있다. ‘계획경제 내에서의 불법적인 2차경제(II 사분면)’는 국영기업 내 불법적인 개인 생산이나, 국가 소·도매점에서의 불법적인 비밀거래 등이 포함된다. ‘계획경제 밖에서의 합법적인 2차경제(IV 사분면)’는 인가받은 사적경제 활동으로,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와 소토지를 개간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획경제 밖에서의 불법적인 2차경제(III 사분면)’는 금지된 물건들의 암시장 거래 및 밀수를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구소련의 2차경제 활동을 합법적 영역과 불법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⁷

(1) 합법적 2차경제

합법적인 2차경제는 그 영역이 매우 넓고 때로는 비합법적인 부분

⁷- Louise I. Shelley, “2. The Second Economy in the Soviet Union,” in Maria Łoś (ed)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London: Macmillan, 1990), pp. 12~19.

I
II
III
IV
V

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구소련에서 비공식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합법적인 활동은 국영농장원 및 협동농장원들이 개인 소토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를 들 수 있다. 이 물량은 실질적으로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70년 중반 기준으로, 구소련의 농산물 산출량의 25%가 개인 소토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농축산물의 사적인 생산활동이 공식 경제활동에서 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종종 법의 경계를 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축을 기르고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료와 사료가 필요한데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농장원이 자신의 생산물을 멀리 있는 시장에 내다 팔려면 중간상인을 활용(불법적인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구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추진되면서 개인의 노동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존의 2차경제 활동 영역 중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분야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규가 제정(1986.11)되어 1987년 5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가내공업(cottage industry), 수공업, 소비자 서비스 및 개인과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경제활동들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옷, 신발, 가구, 카펫, 향아리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재의 사적인 생산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또한 가정교습, 집과 창고의 수리 및 건축물·옷·가구·카펫의 수리·보수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외에도 개인 사진사, 미용사, 문서작업 서비스, 개인 운송업,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개인적인 돌봄 서비스 등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소련경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어두운 측면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경제적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반에 걸친 물자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물자(재료, 원자재, 도구 등)를 조달하게 되었다. 이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르바초프가 2차경제 활동의 많은 부분을 합법화한 것은 소련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 불법적 2차경제

불법적 2차경제 부문은 합법적인 부문에 비해 영역이 더 넓고 복잡하다.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구소련의 국민들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는 가운데, 2차경제 활동은 법적 규제의 완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2차경제 활동의 합법화 과정에서 불법적인 활동의 영역도 함께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2차경제 활동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공식경제 내의 불법적 2차경제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공식경제 밖에 존재하는 불법적 2차경제 활동이다.

(가) 공식경제 내의 불법적 2차경제

구소련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비경제 내에서 착복행위(embezzlement)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상업부문과 식료품 부문에서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당 종업원이 특정 식품을 뒷거래하여 이익을 챙기고, 약사가 항생제를 빼돌려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친구나

I
II
III
IV
V

고객에게 팔거나, 극장표·옷·신발 등을 빼돌리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물건을 빼돌려 얻은 이익은 관리자와 나누기도 하고 단속 기관에 뇌물로 상납하기도 한다. 이같이 공식경제의 생산물을 빼돌리거나 뒷거래를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는 지위 남용이나 투기 등의 경제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 경제에서 불법적 행위가 확산되는 이유는, 상품의 분배체계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분배과정이 국가의 특정기관에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구소련 당국도 상업부문 종사자들의 범죄행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소비재의 분배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높아지고 있었던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소련에서 공직자들의 부패문제는 날로 심화되었다.

구소련에서는 공식경제 내에서 불법적으로나 비합법적으로 일하고 돈을 버는 사람(Shabashniki)이 있었다. 이들은 보통 25~40세 남자로 건설부문이나 농장의 노동자로 일한다. 어떤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용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불법적인 노동활동의 또 다른 형태는 관리자가 유령노동자를 등록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유령노동자는 이름만 걸어놓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⁸

공식경제 내에서 나타나는 불법적인 활동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는 국영공장이나 농장의 외피를 쓰고 비밀리에 가동되는 지하공장(underground factories)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⁹ 원자재는 국영기

⁸ 산업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나타나는 이유는, 관리자들이 중앙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목표치가 관리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성과에 대한 거짓보고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업에서 빼돌려지며 이러한 공장에서는 주로 공급량이 부족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공식경제 밖의 불법적 2차경제

여기에는 허가받지 않는 개인적인 생산과 판매, 암시장, 밀수 등이 포함된다. 주류 생산은 당국의 통제가 강력하지만, 수익이 높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이 불법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구소련에서 밀주의 생산과 판매는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시장이나 암시장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거래되고 있다. 구소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시장은 일반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반 소비재 시장이다. 이들 시장은 거의 공개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지만 당국의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직장 안팎에서도 불법적으로 암시장에 참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구소련에서는 기업의 관리자들이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다. 2차경제 활동의 유형

펠브르그(Feldbrugge)는 2차경제를 ‘공식경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인식하면서 구소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⁹-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USSR,” p. 31.

7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¹⁰

첫째, 국가재산의 전용(the diversion of state property), 국가의 실효적인 통제 하에 있는 국가재산의 물품을 빼돌려 개인적인 생산이나 분배 또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자재의 절도가 있다.

둘째, 국가재산의 유용(the use of state property for private purpose), 여기에서는 물품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2차 경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가소유의 운송수단이나 기계 설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행정관리기구들의 권한 사용(ultra vires of administrative power), 구소련 경제는 중앙통제에 의해서 기계처럼 운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구들의 행정력 행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구소련의 국영기업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넷째, 개인적인 거래(private trading),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으로 정부당국에는 투기(speculation)로 인식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다섯째, 생산, 분배, 서비스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활동(professional activities in the sphere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ervices), 이러한 활동은 각종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 2차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농부의 개인적인 영농활동, 사적인 고기잡이, 소규모 수공업, 개인가정교사 등을 들 수 있다.

¹⁰- F.J.M. Feldbrugge, "Government and Shadow Economy in the Soviet Union," *Soviet Studies*, Vol. XXXVI, No. 4 (October 1984), pp. 530~531.

여섯째, 사적 기업(private enterprise), 사적기업은 국영기업의 비호 하에서 활동하거나 완전히 지하에서 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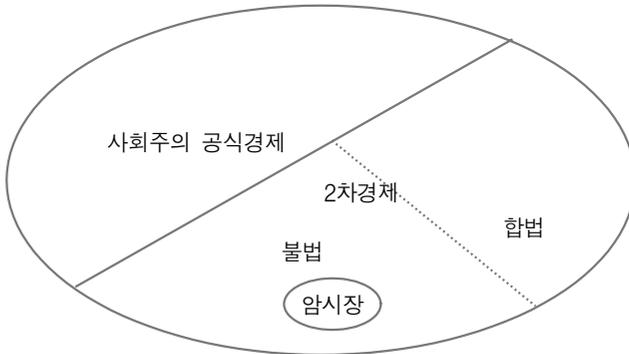
일곱째, 뇌물공여(bribery), 뇌물제공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이것이 독자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2차경제의 공통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에서 뇌물은 2차경제의 전체 연계망을 유지시켜주는 윤활유의 기능을 한다.

2.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공식경제와 2차경제(시장경제)의 상관관계

공식경제와 2차경제는 중앙계획경제(CPE) 시스템 하에서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경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국가마다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여건에 따라서 서로 분리(isolated)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공식경제와 2차경제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2차경제를 공식경제의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다.¹¹ <그림 II-2>는 사회주의 공식경제와 2차경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¹¹ Jorge F. Pérez-Ló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p. 25.

●그림 II-2 사회주의 공식경제와 2차경제



* 출처: Jorge F. Pérez-Ló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p. 26.

국가 경제는 사회주의 공식경제와 2차경제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도표의 위쪽 부분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혹은 공식경제를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엄격한 국가 통제 하에 있는 중앙계획경제의 한 부분이다. 자원이 국가에 의해 소유되며, 자원 할당, 생산, 분배에 대한 결정은 미리 결정된 가격과 조건에 따라서 중앙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도표의 아래쪽 부분은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구성된 2차경제를 보여준다.

한 부분의 경제가 다른 부분의 경제를 이용하려고 할 때, 두 경제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해진다.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2차경제가 공식경제와 경쟁하지 않고 공식경제의 실패를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규 근무시간을 어기지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얻은 부품이나 건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나 집을 수리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공식경제가 전통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2차경제의 성공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는 공식경제의 실패를 노출시키고, 사람들을 국가와 경쟁하는 활동에 대담하게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 경우 2차경제는 종종 공식적인 국가경제를 왜곡시키거나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¹²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2차경제 활동은 그 특성상 공식경제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산출량을 축소시킨다. 암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국가의 배급체로부터 물건을 훔치거나, 근로자들이 공식경제의 직장에서 자재와 설비를 빼돌려서 2차경제 활동에 투입하기도 하며, 근로자들이 훨씬 이득이 많은 2차경제 활동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공식 직장의 작업을 잘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 예라는 것이다.

가. 공식경제와 2차경제의 상관관계의 유형

펠브르그는 구소련의 공식경제와 2차경제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두 경제의 상관관계를 5가지로 구분하였다.¹³

첫째, 연계성이 거의 없는 상태(largely unconnected), 2차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공식경제와 관련이 없으며 그에 따라 공식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거의 없다. 예로써, 개인에 의한 환투기를 들 수 있다.

둘째, 불균형적인 경쟁(imbalanced competition), 재화나 서비스는 공식경제와 2차경제가 공동으로 만들지만, 주어진 환경은 어느 한

¹² Treml, Vladimir and Michael Alexeev, "The Second Economy and the Destabilizing Effect of its Growth on the State Economy in the Soviet Union: 1965-1989," *Duke Economics Working Paper* #95-33, p. 8, <www.econ.duke.edu/Papers/other/Treml/2ndecon.ps>.

¹³ F.J.M. Feldbrugge, "Government and Shadow Economy in the Soviet Union," p. 531.

I
II
III
IV
V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수리 관련 서비스의 경우, 공식경제와 2차경제는 부족한 부품과 숙련된 기능공을 두고 내부적으로 경쟁한다. 그러나 보통 이 작업들은 정규직업의 근무시간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수리 관련 서비스는 주로 2차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균형적인 경쟁(balanced competition), 2차경제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한 상태에서 공식경제와 2차경제는 의도적(by design)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이다. 전형적인 사례가 농업이다. 식량에 대한 사적인 생산은 묵인되며, 농부들은 특정 품목(구소련의 예: 고기, 감자, 야채)의 식량 생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기도 한다.

넷째, 기생적 공생관계(parasitic symbiosis), 2차경제 활동은 완전히 공식경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며, 공식경제의 자원을 훼손(sap)한다. 그 사례는, 국영상점의 종업원이 물건을 몰래 빼돌리는 것과 같은 소규모 거래에서, 국영 기업의 후원 하에서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대규모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협력적 공생관계(cooperative symbiosis), 2차경제 활동은 공식경제 내부에서 일어나며, 공식경제를 지원한다. 국영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물품 공급자(tolkachi)의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공식경제와 2차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시장, 즉 '2차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또는 공식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 하는 문제는 2차경

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와 학자들의 주요 관심분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는 크게 두가지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서구학계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2차 경제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 내부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그러나, 1980년 중반 이후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2차경제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점차 긍정적인 측면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식경제와 2차경제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와 영역, 또는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재검증을 시도하는 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은 특정 주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을 힘들게 한다.

(1) 2차경제와 공식경제의 상관성 연구: 일반균형이론 도입

2차경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 눈에 띄는 논문 중의 하나로 구소련 방식의 중앙계획시스템 경제체제에 2차경제의 도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수리경제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한 스탠 이스로(Stanislaw)와 로날드(Ronald)의 논문을 들 수 있다.¹⁴ 이 논문은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2차경제의 존재가

¹⁴- Wellisz, Stanislaw and Ronald Findlay, "Central planning and the 'Second Economy' in Soviet-type systems," *The Economic Journal*, Vol. 96 (September 1986), pp. 646~658.

I
II
III
IV
V

자원의 배분 및 사회적 효용의 크기, 상품의 생산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서 일반균형이론을 도입하였으며, 생산가능곡선과 사회적 효용곡선을 통해서 2차경제의 존재가 계획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킬 목적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하고 있다.

- ① 계획자의 선호도는 중공업 및 군수부문과 같은 전략부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주민들을 포함한 사회적 선호도와는 다르다.
- ② 2가지 상품(상품 A, B)만이 생산되는 단순한 경제를 가정하였으며, 2차경제는 경공업제품처럼 국가가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는 상품(예를 들면 상품 B)만을 생산한다.
- ③ 두 가지 상품의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는 정부가(상품 B에)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절한다.
- ④ 2차경제에 대한 국가의 제약으로 인하여 2차경제는 기술적 효율성이 제1(공식)경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 ⑤ 2차경제의 존재는 상품 B의 생산가능수준을 통해서 사회전체의 생산가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 ⑥ 2차경제의 파급효과를 인지한 계획자는 전략부문의 상품(예를 들면, 상품 A)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계획량을 변화(자신의 선호도를 이동)시킨다.

이 논문에서 2차경제의 존재는 우선적으로 공식경제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자원의 제2경로의 유출 때문에), 2차경제가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자가 이

러한 현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품목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선택할 경우 공식경제의 상품 생산량은 오히려 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을 고려한 일반균형모델의 최초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지나친 단순화를 위해서 도입한 가정의 비현실성 등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2차경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공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순화 가정으로는 첫째, 공식경제와 2차경제를 대립적인 관계로만 접근하였으며, 둘째 2차경제의 기술수준이 항상 공식경제보다 낮다고 가정함으로써 2차경제의 도입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한 점을 들 수 있다.

(2) 2차경제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성 연구:

계량경제학적 접근

2차경제가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지를 분석하는 트레믈(Treml)과 알렉시브(Alexeev)의 연구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구소련의 가계들이 2차경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국가경제와 어떻게 연계관계를 맺는지를 분석하고 있다.¹⁵ 이를 위해서 일인당 합법적인 화폐소득과 소득의존적인 변수(즉, 일인당 저축과 공식경제부문에서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 수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¹⁵-Treml, Vladimir and Michael Alexeev, "The Second Economy and the Destabilizing Effect of its Growth on the State Economy in the Soviet Union: 1965-1989."

양자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 분석대상 기간의 초기(1965~1970년)에는 양자 간에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점차 그 상관성이 약해져서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상관성이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1965년, 우크라이나는 1970년부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는 2차경제의 발생과 급격한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합법적인 국가소득과 가계로의 소득이전이 비합법적인 2차경제 수입으로 보충되는 정도가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할 사실은 가계소득과 소득의존적인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2차경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많은 거시·미시 경제적 변수, 인구 구조, 사회, 그리고 법·규제 등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석의 결과는 2차경제가 경제체제 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구소련에서 2차경제는 조사기간(1965~1985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반하여, 구소련 경제의 실적은 같은 기간 동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2차경제의 존재가 공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이 논문의 결론은 2차경제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활동할 경우에는 2차경제의 파급효과가 대체로 다른 경제부문에 이롭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나치게 규모가 커질 경우 2차경제의 역할은 점점 더 역기능적으로 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거래비용(계약 강제 의 어려움, 정보의 문제 등)이 규모의 증가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계획자에 대한 반응기제(feedback)의 파괴로 계획의 달성과는 상관이 없는 물질적 유인체계가 강해지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1970년대와 80년대 소련경제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2차경제의 급격한 성장을 지목하고 있는 사실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3) 2차경제 활동의 긍정적인 기능: 서구학계의 시각

2차경제는 공식적인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알트만(Altman)의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소련 2차경제의 특징은 비합법성(illegality)과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경제적 도덕성에 대한 일탈(the contravention of economical morality)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알트만이 강조하고 있는 구소련의 경제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원자재의 공급자와 사용자(생산자)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소속된 중앙계획기구에 종속되어 있다. 최종 생산물의 분배도 비슷하게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비공식적인 해결사(tolkach)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필요한 자재와 재료의 공급 및 심지어는 설비의 문제까지 이 해결사의 역할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해결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식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빌리거나 때로는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2차경제

¹⁶- Yochanan Altman, "Second economy activities in the USSR: insights from the southern republics." Peter M. Ward (ed), *Corruption, development, and inequality: soft touch or hard graft?* (London: Routledge, 1989).

도 공식경제처럼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알트만의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공식 경제부문의 문제점은 대체로 5가지이다.

- ① 공식적인 경제정책은 전통적으로 소비재 보다는 전략부문(중공업, 군수산업 등)을 중시한다.
- ② 소비자, 생산자, 계획자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고리가 없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시장에서처럼 소비자의 반응이 계획자에 바로 전달되지 않는다.
- ③ 가격체계가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 ④ 다단계적인 관료체제로 인하여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관료체계의 특징으로 인하여 하부단위 정보의 전달과 상부기관의 대응 조치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
- ⑤ 구소련의 경제체제는 계획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재의 경우 그 여파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량생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처럼 공식경제부문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2차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차경제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적 선호도를 수용하고, 유행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며, 개인적인 선호에 따른 요구사항에 반응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화 현상이 불가피한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차경제를 통한 시장적 요소의 확산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시 말해 기존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2차경제 활동을 통해서 보완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공식경제 실패의 원인과 그로 인한 2차경제 활성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차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공식경제의 침체가 가속화, 또는 장기화했을 수 있다는 점과 공식경제가 스스로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및 그것의 방법론 등에 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3. 2차경제의 동태학

2차경제의 동태학(dynamics)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정에서 2차경제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식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2차경제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로스(Łoś)의 글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¹⁷

로스는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시장화 현상의 발전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① 급진적 전환단계(the stage of radical transformation), ② 독점화 기간(the monopolization period), ③ 개혁 국면(the reformist phase: 종종 독점화 단계와 겹쳐서 나타남), ④ 개혁 이후 쇠퇴기(post-reformist decadence) 등이 그것이다.

로스는 이러한 단계 구분을 통해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2차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에 대해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¹⁸

¹⁷- Maria Łoś, "Dynamic Relationships of the First and Second Economies Old and New Marxist States," Maria Łoś (ed),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London: Macmillan, 1990), pp. 193~230.

I
II
III
IV
V

가. 급진적 전환단계

사회주의 혁명에 따른 체제전환 작업은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요되기도 한다. 또한 평화적인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란스럽고 폭력적인 봉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단계의 특징은 강력한 국가 총동원(national mobilization), 급격한 산업화(crash industrialization), 경제의 급진적인 재건(radical reconstruction), 격렬한 계급투쟁, 자경단체도(vigilantism), 노동력의 대중동원 등을 들 수 있다.

급진적인 국유화의 과정에서 2차경제부문의 활동과 기능은 자연스럽게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재규정된다. 이에 따라서 시장경제와 사적 자본은,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비난의 대상이 된다. 혁명을 거부하는 ‘계급의 적(class enemies)’을 배격하자는 캠페인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이다.

사적경제와 시장 정서에 대한 혁명세력의 거부감에 대한 2차경제부문의 반응은 자본의 해외 밀반출, 재화와 자원의 비밀스러운 축적, 투기와 태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사회주의적 시장 형태는 혁명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다방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2차경제는 지속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즉, 2차경제 활동이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표면화되지는 못하지만 잠재력으로 내재되는 것이다.

¹⁸ 이후의 글은 로스의 논문을 중심으로 필자의 해설과 견해를 더하는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나. 독점화 기간

독점화 단계의 특징은 당-정의 국가경제에 대한 독점화 경향 증대, 관료주의와 중앙계획체계의 확대, 대규모 기업체의 설립, 사적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다. 이 밖에, 중앙계획체계의 압박효과(stifling effect) 증가, 낮은 생산성과 전반적인 물자부족 현상, 사회통제의 관료화에 따른 사회적 관성과 소외감 증대, 평등주의적 사회프로그램의 영역 축소 및 정치적·행정적 참여의 폭 축소 등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도덕적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서 강제력이 있는 법적 수단을 도입하여 작업습관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증가한다. 또한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생산한 물자들의 공급부족 현상과 투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량과 기초재에 대한 배급제도가 도입된다. 이처럼, 공식경제의 독점화, 관료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존재감이 미약했던 2차경제의 활동영역이 점차 확대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

(1) 공식경제 내에서 비합법적인 기업을 설립하는 행위의 확산

공식경제 내에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비합법적인 기회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물자, 장비, 시간, 노동력 등을 추상적인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할당, ② 생산성과 보상 사이에 충분한 연관성의 결여, ③ 중앙의 계획에서 양적인 목표의 강조, 여기에서는 질적인 측면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 ④ 낭비의 일상화, ⑤ 광범위한 물자부족 현상 ⑥ 노동력에 대한 초과 수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 등이다.¹⁹

I
II
III
IV
V

(2) 암시장의 확대

암시장은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확대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물자가 부족한 경제(shortage-prone economies)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생산재에 대한 강력한 통제, 보조금을 통한 가격 조정, 식료품과 소비재의 국가 배급, 과대평가된 화폐 등은 암시장에서의 가격을 높이고 외화에 대한 높은 환율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체제가 강조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이 암시장의 발생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²⁰

(3) 합법적인 사적부문의 높은 암시장 참여

당국의 규제 강화와 비국유화된 경제단위들에 대한 추가적인 통합 시도 등을 통해서 비국유화된 단위(사적부분)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인하여 시장의 기반을 상실한 합법적인 사적부문에서는 이윤추구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대체 공간으로서 암시장 참여를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19.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낮은 노동 강도, 낭비적이고 빈약한 조직체계, 양적 성장에 대한 집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20.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가치에 대한 개념은 물자의 순환과정(the process of circulation)에서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행정적인 분배를 위한 경제적 분배과정을 축소시키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관련된 전통적인 행동들은 기생적(parasitic)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자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는 범죄시 되고있어 암시장 성격을 띤 2차적인 현상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4) 지하경제 활동의 확대

비합법적인 지하경제는 완전히 합법적인 사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이익이 많지 않을 때 확산된다. 기본적으로 지하경제는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경제적 욕구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비합법적 기업은 정규 직장에서 제공하는 금액보다 높은 임금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지하경제에 참여하게 되는 근로자들은 정규 근무시간에는 체력을 비축하거나 계획적으로 결근을 함으로써 공식경제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국가 소유의 도구나 원료를 쉽게 전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5) 농촌지역에서 경제적 저항의 확산

독점화 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농촌지역에서의 경제적 저항은 토지개혁의 초기단계에서 농민들이 누렸던 혜택에 역행하는 조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농민들은 자신들을 국가기관에 소속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가 어려워져서 합법적으로는 필요한 공급품을 획득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

(6)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비공식적 2차경제의 급속한 성장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비공식적 2차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공식경제와 2차경제 사이의 복잡한 연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경제와 2차경제는 연줄의 작용, 뒷거래, 관료들의 부패 등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물자부족이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

I

II

III

IV

V

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인척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다. 개혁 단계

독점화 단계는 추진되는 과정에서 종종 개혁적인 실험에 의해 중단 되기도 한다.²¹ 산업의 국유화와 경제의 재건설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당의 지도층에서는 통제경제의 내생적인 한계를 인식하여 시장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개혁적인 조치를 시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 내부에 대한 개혁과 2차경제의 부분적인 합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1) 국가경제 내부의 개혁

공식경제 내부에 대한 개혁은 일반적으로 분권화를 강조하는 방향, 다시 말해 좀 더 자율성이 강조되는 생산지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계획 모형을 조정하는 형태(a more liberal, indicative planning model)로 전개된다.

중앙계획모형을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은 오스카 랑게(Oskar Lange)에 의해서 제안된 소위 ‘시장-사회주의(market-socialism)’ 형태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오스카 랑게의 ‘시장-사회주의’ 모형의 특징은 “시장을 통한 소비재의 배분과 계획기제에 의한 투자재의 분배”로 요약된다. 이 모형에 따르면, 국영기업들도 소비

²¹ 그러나 개혁적인 활동은 이후 또 다른 보수적 독점(conservative-monopolistic) 정책에 의해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재 시장에 반응하고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형을 현실에 적용하려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²² ① 생산재의 고정가격을 계산하는데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책정, ② 소비재 시장을 투입요소의 배분체계와 인위적으로 분리하고자 시도, ③ 유인책 마련의 중요성을 무시, ④ 계획수립자들이 가격 조정을 통해서 물자부족과 잉여에 반응하고, 소비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할 때 계획수립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점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공식경제에 시장 요소를 도입하려는 개혁적 시도는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관성으로 인하여 성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투자에 대한 중앙의 계획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보장해주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계획의 분권화 시도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흔들고 기득권층의 경제적 권력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재와 투입 요소의 배분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행태가 일반화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공식경제에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려는 개혁적 시도가 근본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영기업의 차원에서도 이윤추구의 원칙을 강조하고 생산량 대신 판매금액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개혁적 조치가 도입된 것은, 비효율적인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제한된 기회만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재의 판매는 여전히 계획을 통해서 보장받아야 되고, 공급이 부족한 소비재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 등에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²²- J. S. Prybyla, *Market and Plan under Socialism*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7), p. 7.

I
II
III
IV
V

2차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방식의 개혁이 비합법적인 사적기업에게 공식경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유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국영기업들이 생산의 종류와 규모를 좀 더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 지향적인 개혁은 서방 국가나 국제기구들에게 바람직한 조치로 인식되기 때문에 차관 제공이나 기술 제공 등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절실한 이러한 형태의 자원유입은 이들 국가 내에서 기업들 간에, 또는 지역 간의 격차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비합법적인 수단과 뇌물 공여가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된 자원을 2차경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2차경제의 부분적인 합법화

경제개혁의 두번째 형태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 사적인 경제 활동분야를 합법화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투입요소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생산물 판매시장에 대한 경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내부적인 개혁조치들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게 된다. 또한 사적인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공식적인 법규는 보통 애매하고 모순적이며 자주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부는 사적부문의 낮은(보조적인) 위상을 지속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계획경제로 통합시키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시장 마인드를 복돋우고자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합법적인 사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이익구조를 불투명하게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불법적인 사적 기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감

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가격 인상을 유발하게 된다. 소비재 시장의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가격 체계는 여전히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생산되는 선택된 부문들로 인해서 왜곡된다. 따라서 가격이 시장의 불균형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혁 단계에서 공식경제 내에 물물교환 방식의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경화(硬貨)의 역할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외환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시장의 영역이 확대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외환이 아쉬운 정부는 국가가 운영하는 외환상점의 상품 숫자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시중의 외환을 흡수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

(3) 개혁조치의 효과

위에서 언급한 시장 지향적인 개혁은 사회주의 고유의 평등 이념을 부정하는 성격이 있으며, 현실에서는 계층간, 지역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장 지향적인 개혁에 대한 반응은 공식경제와 2차경제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미 시장에 기반을 둔 2차경제는 새롭게 합법화된 분야에 재빨리 진출하거나 공식경제 내부의 변화 속도 둔화에서 비롯되는 비합법적인 기회를 활용한다. 공식경제의 경우에는, 관료조직과 정치기구들의 모든 수준에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감지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방에 대한 개혁은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고립성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I
II
III
IV
V

경제개혁이 2차경제에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합법과 비합법 시장의 차이가 매우 불분명해 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개혁이 다소 모호하게 기획되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경제주체들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합법적인 2차경제의 어떤 분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기존에 적용되었던 경제원칙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redefinition)하는 작업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2차경제의 성장은 통제가 어렵게 된다. 강력한 통제기제에 대한 이미지는 퇴색되고 대신에 통제체계가 허점이 많고, 부패에 노출되어 있으며, 모순투성이 인데다가, 봉건적인 관료주의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인식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라. 개혁 이후 쇠퇴기

이 단계는 경제개혁이 폭 넓게 시도되었으나 개혁 조치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기간이다. 198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폴란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전의 단계 즉, 개혁까지의 단계가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비교적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데 반해서, 이 단계의 특징은 국가마다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는, 통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심각한 실업율, 국영경제부문의 낮은 발전 속도, 경화(硬貨)에 기반한 2차경제와 분권화된 정부조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돈상태로 몰아갔다.

헝가리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엘리트 그룹들은 점차 가난한 사회로부터 벗어난 반면에, 국가경제 전반은 생기를 잃고 성장의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폴란드는 말 그대로 ‘이중 권력 사회(dual power society)’가 되었다. 정부의 하향식 개혁은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였으며,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교회의 보호를 기반으로 2차경제를 선호하는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은 국가경제와 시장경제의 강제적인 결합으로 인하여 각 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생하는 형태로, 정치적·경제적으로는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상대 경제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식경제를 통제하는 그룹들은 2차경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2차경제에서는 제한된 생산재에 대한 좀 더 많은 사용권을 원하지만 소비재의 공급과 질적 향상에 대한 기여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2차경제의 기여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적인 시장은 본능적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사치재를 생산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욕구는 점차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충족되지 않는 일반주민들의 수요에 따른 압력은 오히려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는 무능력한 국가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시장 사이에서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I
II
III
IV
V

(1) 개혁 이후 쇠퇴기의 주요 특징

동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2차경제는 사회주의체제의 고유한 특성(the system-specific causes)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공식경제의 일반화된 비효율성과 관료화, 중앙계획이 내포하는 태생적 문제, 실업과 감춰져 있는 유휴 노동력, 산업부문의 투입요소에 대한 정부의 통제, 중앙의 가격에 대한 규제 및 이에 따른 시장의 불균형, 평등주의의 기계적인 적용, 사적부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가족농 지향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2차경제는 경제분야와 이념부문에서 제1(공식)경제와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당-국가 중심의 경제(party-state economy)체제를 위협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전통적인 이념의 틀에 기초하여 1차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당국의 노력은 오히려 2차경제의 진화를 초래하게 된다.

개혁이후 쇠퇴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과 가능성들은 다음과 같다.

- ① 개혁기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과정은 정부의 독점화를 약화시키고 그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유화와 시장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② 국가 기능의 약화는 군대의 개입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군부의 통제는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더 복잡하게 만든다.
- ③ 정권 초기의 이념적 집착(ideological dogma)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를 계기로 이념적 전체주의에서 실용적 권위주의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변화의 결과로,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서방의 자

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게 된다. 이제 이념적 차이는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저발전의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는 않게 된다.

(2) 주요 과제

그러나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해서 경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조만간 그 한계를 노출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또 다른 혼돈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서방세계의 고민은 ‘이들이 변화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혼란과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서 북한경제가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을 시도할 경우 어떤 형태의 혼돈상태가 야기될 것인가 하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개혁 이후 쇠퇴기에 직면한 국가들의 일차적인 과제는 경제적 개혁 실험에 따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보수적인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의 저항과 더욱 확대된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통해서 체제전환의 수순을 밟는 것 중의 하나를 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체제전환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의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

II

III

IV

V

체제전환을 선택할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는 체제전환의 구체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의 영역, 속도,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체제전환의 속도와 관련,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경우 2차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 전략에 따른 효과성을 비교하는 연구에 따르면, 점진적인 전략 보다는 급진적인 형태의 개혁 추진 전략이 사적경제의 비중을 증대시키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한 국가들의 사적경제부문의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차이가 상당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통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자본의 투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체제전환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적경제의 합법화를 기초로, 사적경제활동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작업의 성공 여부는 사적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는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²³ 임강택 외,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 136~137.

마. 소결: 2차경제의 발전경로

단계 구분	공식(제1)경제의 특징	2차경제의 특징	공식경제와 2차경제의 관계
급진적 전환단계	강력한 국가 총동원, 급격한 산업화, 경제의 급진적인 재건, 격렬한 계급투쟁, 자경단 활동, 노동력의 대중동원	자본의 해외 밀반출, 재화와 자원의 비밀스러운 축적, 투기와 태업 등의 형태로 표출	2차경제는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비난의 대상
↓ 독점화 기간	당·정의 독점화 경향의 증대, 관료주의와 중앙 계획체계 확대, 대규모 기업체 설립 추세, 사적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 물자 부족 현상과 투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식량과 기초재의 배급제 도입	고위급의 부패행위 증가, 국가경제 내에서 비합법적 기업의 설립 확산, 암시장의 확대, 합법적 사적부문의 암시장 참여 증가, 지하 경제활동의 확대, 농촌 지역에서 경제적 저항 확산, 네트워크에 기반한 비공식적 2차경제의 성장	공식경제의 독점화, 관료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2차경제의 활동영역이 점차 확대
↓ 개혁단계	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로 대두, 중앙통제경제의 내생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요소를 도입하는 개혁적인 조치 시도	요소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 하에서 2차경제의 부분적인 합법화 조치 추진, 2차경제에 대한 규제 장치들이 미작동, 사적인 사업을 규제하는 공식적인 법규는 애매하고 모순적이고 자주 변하는 경향	공식경제에 대한 개혁 시도가 비합법적인 사적기업에게 1차경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유인을 제공, 사적부문의 보조적인 낮은 위상을 유지시키려고 시도하고, 계획경제로 통합시키려고 노력
↓ 개혁 후 식퇴기	폭 넓은 경제개혁이 시도되나 실패를 경험, 정부의 독점화 약화, 사유화와 시장화를 기초로 새로운 진로 모색, 결국 자본주의 체계로의 전환 시도, 이념적 전체주의에서 실용적 권위주의로 사고의 전환	2차경제는 제한된 생산재에 대한 더 많은 사용권한 요구, 사적시장은 사치재를 생산하는데 관심 집중, 2차경제는 경제와 이념부문에서 공식경제와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당·국가 경제를 위협	공식경제와 2차경제가 내포하는 본질적인 모순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기생하는 형태로, 상대 경제를 이용하려 함. 1차경제를 통제하는 그룹들은 2차경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함.

I
II
III
IV
V

Ⅲ. 시장화 현상의 사례 분석



시장화 현상에 대한 사례분석은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관련 현상을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국가와 적당한 기간을 대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 대상 국가로는 북한에 인접해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치적인 접근에서 유사성이 많은 중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면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외적인 환경에서 유사점이 많은 쿠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분석대상 기간은 1980년대까지로 국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의 중국의 경우는 빠른 속도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적용하기에는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에서 쿠바의 경우에도 19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쿠바²⁴

쿠바의 2차경제 대한 연구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2차경제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깊이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접근과 정보의 제약과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2차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선적 선택은 그들의 행동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는

²⁴ Raymond J. Michalowski and Marjorie S. Zatz, "The Cuban Second Economy in Perspective," Maria Łoś (ed.),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London: Macmillan, 1990), pp. 101~121; Jorge F. Perez-Lo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것이며, 대부분의 2차경제 활동은 국가의 공식적인 보고 체계의 밖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헌상에서 2차경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차경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인터뷰와 증언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편향성의 가능성, 즉 이주자 그룹들의 성격이 주로 반 쿠바정부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가. 쿠바의 2차경제의 기본 특징

쿠바에서 발견되는 2차경제는 쿠바 사람들이 하루하루 경제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의존하는, 중앙 계획경제(1차 경제) 안팎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으로, 주로 불법적인 활동으로 구성된다. 합법적인 2차경제 활동은 개인농장(이 중 대부분은 환금 작물이라기보다는 연명하기 위한 것임)과 개인택시와 같은 소규모 서비스에 제한되어 있다.

쿠바의 2차경제의 규모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쿠바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988~1989년 기간 동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경제활동은 GSP(global social product)의 최소 6%에 해당하고 약 230,000명의 노동자가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민간부분 고용인구의 약 6%에 달하는 규모이다.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은 전체 인구가 벌어들인 수입의 5~6%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합법적인 사적경제활동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쿠바에서 합법적인 민간 기업활동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혁명시기 이전에 수출 상품과 자본재 부문에 자본의 집중 정도와 외국인 소유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들을 국유화하면서 이 영역에서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쿠바의 지도층이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쿠바 사회주의의 이념과 실천은 사적인 효용성에 대한 소비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시민으로서의 덕목이라는 사회주의적 개념을 지향하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과 ‘도덕적 인센티브’라는 개념과 이념은 쿠바에서 합법적인 민간 기업의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불법적인 사적경제활동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물자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구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거래는 교환하는 물건들이 정부에서 훔친 것이기 때문에 불법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배관 공사, 가전제품 및 자동차 수리, 미용업과 같은 서비스는 공식 경제 밖에서 기술자들이 제공한다. 불법적인 경제활동은 주로 현금 거래로 이루어진다. 암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회계기록 작성을 혐오하며 익명성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현금 거래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인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를 보면, 쿠바의 소비자들은 상당량의 현금을 갖고 있지만 공식경제 내에서는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에 별다른 쓸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공식경제 내에서의 불법적인 활동

쿠바경제가 주로 농업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과 같이 산업화 수준이 비교적 낮고 해외로부터의 수

I
II
III
IV
V

입에 의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자본재, 석유, 의약품, 새로운 기술 등 수입품 중 대부분은 외화로 구입해야만 한다. 외화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입품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다른 수입 소비재의 공급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국내 경제에서 개인 소비재보다는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사회적 소비 지출 또는 경제개발에 우선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경제정책은 국내에서의 소비재 공급을 더욱 위축시킨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의 분배는 전형적으로 공식적인 배급 또는 동료들이 매기는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혁명 전의 쿠바돈은 부패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분배를 결정하면서 돈의 힘은 약화되었다. 결과적으로 혁명 전에 공무원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각종 불법행위와 부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발생하였지만 그 형태는 사회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되었다. 특히 뇌물수수가 줄어든 반면, 희망하는 상품 또는 기회에 대해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하는 공무원들은 서로 서로 특혜를 거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일부 사례들에서, 공적인 지위는 자기 자신에게보다는 가족 또는 친구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공식경제 내에서 이러한 활동의 범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으로 쿠바 정부 관료들과 ‘나태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관료들에 대한 대중적인 비판과 부패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평가하고, 대중적인 조직, 특히 지역, 국가 및 국회의 영향력을 판단해 왔으며, 뇌물의 수단이 되는 폐소의 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패와 정부 권력의 남용은 혁명 전의 시기보다는 상당히 덜 일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공식경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활동

쿠바 정부가 식량과 다른 소비재의 유통체제를 국유화한 순간, 과거에 합법적이었던 활동이 불법적인 것으로 변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불법적 시장에 접근하는 행위를 통해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식료품 암시장

가격표시제를 통해 식량 배분의 방향을 조정하고자 한 쿠바 혁명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이후, 식료품을 거래하는 암시장이 쿠바에 등장했다. 식료품에 대한 암시장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경우, 불법행위는 소규모이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국가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중량을 속이고 남는 것을 불법적으로 판매한다. 마찬가지로 국영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일부만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것을 암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큰 규모의 불법활동에 대한 증거도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료품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정부의 식료품 공급량에서 빼돌린 것이거나 수출 시장에서 훔친 것이다.

배급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식료품의 ‘회색시장’이 등장했다. 암시장과는 달리, ‘회색시장’은 보통 판매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건을 판매 또는 거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일 나무나 작은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과일 등의 물건을 파는 것이다. 또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예를 들어 담배, 커피 또는 식품을 배급받았을 때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팔거나 거래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런 형식의 회색시장 활동은

I
II
III
IV
V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회색시장과 암시장 활동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 할당된 커피를 단순히 거래하거나 파는 대신에 부업차원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분배량을 구매하여 암시장에서 되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은 과일이나 채소를 직접 먹기보다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을 처음 획득하는 것은 합법적인 반면, 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반면, 이익을 얻기 위해 팔거나 되파는 것은 회색 시장과 암시장 사이를 넘나드는 것이다.

(2) 내구성 소비재의 암시장

내구성 소비재의 암시장은 식품류의 암시장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암시장에는 수입한 품목도 포함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 관련된 경우 내구성 소비재의 암시장은 여러 방식에서 식품 암시장의 방식과 유사하다.

국가의 배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옷과 개인 품목을 제공하고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과 같은 가정용품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도록 쿠폰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내구성 소비재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시장으로 유통된다.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내구성 소비재는 보통 정부의 보관창고에서 훔친 것이다. 훔친 물건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종종 되팔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암시장 분배망에 접근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연루되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 대까지는 이런 종류의 절도가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단속기관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재를 만들 수 있는 나무, 가죽이나 옷과 같은 원자재도 절도의

대상이 된다. 이런 범죄는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주로 목수나 가죽업자와 같은 장인들, 또는 국영 기업에서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연루된다. 식량 암시장과는 달리 가정용 내구성 소비재로 배급된 물건들을 거래하는 ‘회색-암시장’이 있는데, 배급받은 일부 소비품을 교환하거나 나중에 이익을 붙여서 되팔려는 불법업자들에게 팔기도 한다.

(3) 외화 암시장

쿠바의 암시장 활동 중 마지막 형태는 외화, 특히 미국 달러를 획득하는 불법적인 수단과 관계가 있다. 관광을 장려하고 외화를 추가로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970년대 후반에 정부는 호텔에 관광 기념품 가게를 설립했다. 외화만 받는 이 가게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한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며, 이 중 대부분은 쿠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거나 아주 극소량만 살 수 있고 그나마 아주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외국 상표의 디자이너 옷, 비디오테이프 재생 장치 또는 카메라와 같은 품목을 원하는 쿠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정한 환율보다 높은 환율에 외국인 관광객들과 페소(peso)를 달러로 거래하는 것이, 기념품 가게에서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호텔 상점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한 일부 물건이 암시장으로 흘러 가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하는 것이다. 외환의 불법 거래는 젊은 도시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범죄일 것이다. 그러나 달러를 불법 거래하는 것은 ‘하바나’와 같은 관광지에서 주로 한정되어 있다. ‘하바나’에 넘쳐나는 외국인들과 자주 접촉함에 따라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새롭고 고급스러운 물건에 대한 소비 요구가

생기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 통제 노력

쿠바당국이 암시장과 회색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은,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처벌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건을 늘리고 이념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용 가능한 물품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세 가지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쿠바는 혁명 이후 손실된 숙련기술자들을 충원하고, 토지와 자원의 분배를 재조정하여 기존의 수출품 생산 중심에서 국내 소비품 생산 증대로 초점을 변화시켰으며, 협동농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배급제도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제외할 수 있을 만큼 생산량이 충분히 증가시켰다. 1970년과 1980년 사이, 정부는 배급 제도로 통제하고 있는 기본 식량 품목의 수를 50%까지 줄일 수 있었다.

둘째, 이렇게 늘어난 공급물자 덕분에 1970년대 중반 ‘평행(유사) 시장(parallel market)’을 개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용된 평행(유사)시장에서는 배급되지 않는 품목이 팔리게 되었고, 배급 품목이더라도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게들과 ‘자유로운’ 품목이 진출하게 되었다. 평행(유사)시장의 가격은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급 품목의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높았다. 평행(유사)시장의 상점에서는 혁명 이후 십년 동안 불가능했던 자유재량 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셋째, 1980년 농민시장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장 사회주의라는

이 특별한 실험은 1986년 막을 내렸다. 문을 닫은 이유 중 하나는, 일부 농부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보다 더욱 수익이 높은 농민시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시장이 자본주의 구조를 재생산해 서라기보다는 자본가들의 이기적인 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중 조직, 특히 ‘이웃을 기반으로 한 혁명방어위원회(CDRs)’를 통한 이념적 압력은 쿠바의 암시장 활동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DR은 배급 통장을 발행하고 특별한 배당에 대해 결정하며 일반적인 배급 시스템을 감시하였다. 가장 활동적인 CDR 구성원은 혁명에 가장 충실하고 혁명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쿠바 사람들이 식품의 암시장이나 회색시장에 접촉하고 있지만, CDR 활동가들에 의한 도덕적 제재와 동료로서의 압력은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었다.

암시장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개인적인 범죄의 경우와 형사적인 조직의 범죄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개인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보통 벌금형 또는 최소 3개월(청소년의 경우 더 적음)에서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이다. 더욱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처벌은 1년에서 8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소매업자들에 대한 조치

소비재의 배급 시스템에는 정부 관료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횡령할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많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불법 활동에 연루된 소매업자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1979년 11월 ‘하바나’ 시의 정육점과 생선 가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을 높여 팔거나, 거스름돈 속이기, 2등급의 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파는

사례를 무수히 적발하였다. 이 사례는 널리 공표되었고 이 업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1982년 4월에는 우유판매점을 급습하여 많은 신선한 우유가 뒤로 빼돌려져 시중에서 3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담배, 자동차 부품, 주류 등과 같이 판매가 금지된 물건을 파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2) 중개업자들에 대한 조치

쿠바 정부가 때로는 암시장을 묵인하기도 하였지만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자유농업시장(MLC)이 설치되기 전, 개인 농부들이 생산량의 초과부분을 다른 농부나 농장을 방문한 도시 거주민들에게 팔 수 있었는데 한 번 방문할 때마다 25파운드 이상을 살 수는 없도록 했다. 만약 개인이 한 번에 25파운드 이상 살 경우 암시장의 잠재적인 중개업자로 간주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체포하였다. 이를 위해 1978~1979년 동안 경찰은 정례적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고 진입하는 차의 화물을 검사하였다.

1982년 자유농업시장(MLC)과 예술품시장(MA)에서의 불법활동을 단속하였는데, 농부나 장인이 아닌 판매업자들, 정부에서 명령하여 물건을 판매한 경우 등이 발각되었고 언론에 공표되었다. 또한 1982년 3월에는 전문적인 중개업자들을 단속하였는데 가택을 수색하자 옷, 도자기, 선풍기, 여성 속옷, 텔레비전, 녹음기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3) 생산자들에 대한 조치

1982년 MLC에서의 불법 활동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같은 맥락에서 예술품시장(MA)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정부의 단속이 시행되었다. 1982년 3월에 개시된 단속은 수입이 좋은 수공예품 판매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노점을 조사한 결과, 수많은 불법 생산활동이 발각되었다. 예를 들면 은퇴한 사람이 옷감과 옷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정부가 국영 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다. 또한 예술품시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여러 명 사적으로 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1988~1990년 동안 35개의 경제범죄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례(35개 중 25개)가 수도인 ‘하바나’ 시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다수(35개 중 32개)가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 19개 사례는 국영기업의 편법 경영과 관련되었다. 또한 94%가 원자재와 관련이 있었고, 80%가 소매 및 도매 무역, 식당업과 관련된 서비스 직종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범죄 중 으뜸은 사기 범죄였으며 모든 사례의 91%에 해당하였다.

마. 쿠바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조치

쿠바정부의 시장화 조치는 1991년 쿠바 공산당 4차 당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때 쿠바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회주의 모델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다만,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2차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1차경제(계획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던 것이다.

I
II
III
IV
V

쿠바 정부의 시장화 조치는 초기에는 공식경제 외부에서 작동하는 외국투자자들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촉진하고, 국가식량계획의 분권화와 국가로부터 많은 자율성을 가지는 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어 1993년 중반 이후 공식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쿠바 정부는 보다 전격적인 시장화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쿠바 국민들의 외환 사용 허용과 자영업의 합법화 및 비효율적인 국영농장의 해체 등이다.

쿠바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모색하는 대신에 2차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1) 외국과의 합작투자의 자유화

1982년 쿠바는 최초로 국내기업과 합병의 형태로 외국투자를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²⁵ 쿠바정부의 관심사는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원자재를 공급하고 수출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낮은 가동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5. 1982년의 헌법개정으로 쿠바에는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 49%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Decree Law 50)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1992년 전국인민권력회의에서 승인된 헌법수정조항은 합작투자 기업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Decree Law 50을 적용하는데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외국인이 100% 투자한 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1996년 6월에는 신 외국인 투자법에 기초한 자유무역지대법이 공포되고, 1997년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다.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관세면제 및 세금감면, 2) 공장 및 사무실과 같은 인프라 제공, 3) 쿠바인 투자·합작투자 및 100% 외국인 투자 허용, 4) 노동규제 완화로 합작투자기업에 고용자율권 부여(100% 외국인 기업은 노동부 지정기구로부터 노동력 채용), 5) 제조업 이외에 금융·은행·보험 등의 서비스업도 개방, 6) 쿠바산 원자재 사용 정도에 따라 정규 수입관세를 적용, 쿠바 국내시장에 25%까지 판매할 권리를 부여, 7) 과실송금 자율화 등이다. 광재성, “1990년대 쿠바의 개혁과 대외개방,”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15권 2호 (2002), pp. 10~12.

1980년대 후반 이후, 관광산업부문에는 의미있는 외국투자가 이루어졌다.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쿠바 정부 노력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법규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²⁶

또한 설탕산업을 포함해서 합영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시켰으며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였다. 1993년에는 석유산업에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었다.

핵심적인 법규를 고치는 작업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관광산업분야의 합영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관광업계의 근로자들에게 높은 보상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992년 6월 중순에 쿠바 국회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을 실시하였다.

- article 23. 1976년 사회주의 헌법에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합영기업, 회사, 조합에의 한 재산의 소유권 국가가 승인한다”는 조항을 추가
- article 14.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모든 생산수단에 적용하는 대신에 기본적인 생산수단에만 국한하도록 수정
- article 15. 국가소유 재산을 사적 소유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헌법적 기초를 마련

이같은 제도적 개혁의 결과로, 국내기업과 합영의 형태로 투자한 해외투자기업은 1차경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본주의의 섬(island

²⁶ 법규의 신축적인 적용의 예로써, 땅과 건물의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기업의 지분을 49% 이상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합영기업이 관세없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
II
III
IV
V

of capitalism)’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노동력을 포함하여 국내자원의 취득과 활용,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 및 생산물의 수출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이들 합영투자기업들은 효율성과 훈련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3년 99개의 합영회사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에서 21개가 관광분야의 기업들이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쿠바정부의 공격적인 합영기업 활성화 정책은 기반적인 사유화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유화 계획이 외국인들에게만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2) 기업의 자율성 확대 및 자영업 허용

(가) 기업의 자율성 확대

1990년대 초, 국방부 산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에 고무되어, 쿠바는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합의에 의한 경영(management by consensus), 단체 작업(group work), 품질관리 분임조(quality-control circles)²⁷, 직무 순환(job-rotation)²⁸,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participatory

27. 품질분임조란 같은 직장 내에서 작업 및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자발적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는 소집단을 의미한다. 종업원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품질향상은 한계에 부딪친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1960년대 초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된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조현장에서 개선 및 혁신의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하였다. 출처: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http://sppm.korcham.net/>)교육자료.

28. 직무교체제(職務交替制)·직무순회라고도 함. 계획적으로 여러 부류의 직무를 차례 차례로 역임시켜, 해당분야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그 경험을 축적시킴으로써 능력·지식 및 자질을 계발(啓發)시키는 방식이다. 종업원 일반에게 여러 종류의 일을 차례차례 바꾸어가며 담당시키는 방법이다. 동일한 직무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단조로운 느낌에서 오는 의욕저하가 없어지며, 직업병도 없어지고 공평감(公平感)을 느껴 항상 의욕이 생긴다. 이와 같은 방식이 목표관리

decision making)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서 기초산업부 산하의 12개 이상의 기업들이 인상적인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기를 가져온, 일본식 경영방식인 품질분임조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중앙집중화된 물질적인 목표로부터 정부기관과 기업들을 해방시켰으며, 이러한 조치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에 벗어나도록 하는 경영 혁신에 더하여, 무역활동의 분권화를 포함한 산업구조상의 개혁도 추진되었다. 또한 대외부문과 관련된 기업들은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무역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외환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 이들은 수익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쿠바는 ‘익명회사(sociedades anonimas)’²⁹ 관련 법규를 통해서 ‘유사 사기업(quasi-private company)’의 설립을 허용했는데, 이 기업은 국가로부터 독립성이 부여되었다. 이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공인한 국내 자본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익명회사’들은 쿠바 내 자본주의 영역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부가가치 배분방식 등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종이나 직급에 따라 역입할 수 있는 직무를 표준화(標準化)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을 커리어 패스 프로그램(career path program:CPP)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http://100.naver.com/100.nhn?docid=138471>>.

²⁹ 공동경영과 단순한 동이의 의미로서 법인이전의 비공식적인 조합을 의미한다. 익명 회사, 익명의 제휴 회사 또는 공유회사.

(나) 자영업의 허용

1991년 10월, 공산당 4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사항 중의 하나가 자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국가목표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자영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시켜주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 것이었다.³⁰ 그러나 관련 규정(Law-Decree No. 141)은 1993년 9월에 가서야 발표되었다. 이처럼 실행 시기가 지연된 데에는 정부 관료들이 자영업의 합법화와 확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아주 결정적인 단계로 인식하고 있어서, 자영업을 자유화하기 이전에 다른 방안을 통해서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978년 7월, 쿠바정부는 50가지에 가까운 서비스 직종을 개인들에게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가족은 국가에 등록을 하고 연간 수수료와 소득세를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교정작업이 진행되면서 카스트로는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이 소비자를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자영업을 제한하는 캠페인을 이끌었다. 하지만, 1990년대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많은 노동자들을 ‘관례적인 고용’(habitual employment)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동시에 이들은 음성적인 경제행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에 발표된 자영업 허용 법규 및 관련 규정들은 이미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2차경제 활동을 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불과하였다.

2차경제 활동을 금지시킨 1978년의 규정이 폐지된 것에 더하여, 새

³⁰ Jorge F. Perez-Lo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pp. 163~170.

로운 법(Law-Decree No. 141)의 신설을 통하여 CETSS(The State Committee for Work and Social Security)에게 개인적인 자영업이 적합한 업종은 무엇이고 개인들이 자영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격 조건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적용할 규칙과 규정은 무엇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개인들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위원회(CEF: State Committee on Fiance)에 등록해야 하며, 매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며 자신들이 팔고자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국가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993년 9월 8일에 발표된 “노동에 대한 공동결의문(CETSS-CEF 공동결의문 No. 1)”에 따르면, 100가지의 자영업 직업군이 선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다.³¹

- ① 중간수준의 기술자로서 현재 국가 노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 ② 은퇴했거나, 노동능력이 감소한 노동자
- ③ 특정한 기간에만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이거나, 공장 폐쇄로 인한 실직자
- ④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이유로 인한 실직자
- ⑤ 전업주부

그러나 이런 자영업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대학졸업 후 아바나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한 달에 340페소의 수입을 얻는 반면, 미용사의 수입은 1,200페소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을 규율하는 몇 가지 조건들도 제시되었다.

³¹ 이 공동결의문이 담고 있는 것은, 건강과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는 여전히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비용없이 제공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아울러 물리학자, 치과의사, 학교교사, 대학교수, 연구원들은 국가가 관리하며, 자영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다. 대학교육을 받은 자들 역시 자영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I
II
III
IV
V

- ①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거래 가격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단, 국가가 규제하는 품목이거나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규제된다.
- ③ 노점상의 지나친 확산을 억제하고 중개상들의 탄생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 ④ 초기 단계에서는 누진적인 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 ⑤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직종에 따라 매월 수수료를 시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 ⑥ 국가기관은 자영업자들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동물이 끄는 마차의 이용, 농업 관련 활동 및 기타 CETSS가 허용한 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 ⑦ 상기 제약조건을 지방의 식품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10월, CETSS는 18개의 새로운 직종을 자영업 기능 목록에 추가시켰다. 새로운 직종에는 자전거와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지켜주는 일, 화환 제조, 예술품 복원작업, 수공예품 판매, 자전거를 이용한 화물 운반, 비디오 상영, 음악 교육, 타자치기, 비누 만들기, 구두 만들기 등이 포함되었다.

1995년에는 대졸자의 자영업 종사를 허용함으로써 종사자의 저변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1997년에는 개인의 임대사업이 허용되었다.³²

³² 외교통상부, 『쿠바개황』 (2004), p. 33.

(3) 국가식량계획의 분권화

1991년 10월 공산당 회의가 개최되자, 여기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안 중의 하나는 MLC의 복원이었다. MLC이 개인 농민들의 식량 생산을 자극하고 식량생산프로그램의 종합적인 목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암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MLC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카스트로가 MLC의 복원은 경제의 비정상화를 키우고 부패를 확산시킬 것이며 소규모 농민들이 국가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의 재분배가 아닌 대규모 농업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MLC 복구 제안은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식량생산프로그램의 차원에서 2차경제에서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예를 들면, 식량의 자가소비를 위한 텃밭 경작이 폭넓게 허용된 것이다.³³

그러나 전격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1993년 9월부터 쿠바정부가 국영농장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93년 9월 중순경, 쿠바 공산당 정치국은 국가농업생산의 ‘혁신(innovations) 작업’을 승인하였다. 이 혁신 작업의 목표는 원자재의 최소한의 사용을 통한 생산의 증가, 노동자들의 효율성과 동기유발이었다. 쿠바공산당 정치국이 이를 위해 채택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과 토지를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의 동기유발과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책임감을 유도한다.

³³- Jorge F. Pérez-Ló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pp. 158~161.

I
II
III
IV
V

- ② 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자체적인 식량문제 해결은 공동노력을 통해서 달성되며, 이러한 노력은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③ 노동자들의 수입과 그들의 생산 실적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④ 농업생산단위는 중앙정부 및 국영농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준하여, 정부는 국영농장을 해체하고 국영농장 안에 새로운 ‘협동생산기본단위’(Unidades Basicas de Produccion Cooperativa: Basic Cooperation Production Units: UBPC)를 신설하였다. UBPC는 토지의 영구적 사용, 생산 결과에 대한 소유, 생산물의 자유로운 판매, 기술적·물질적 자원의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과 비용 지불, 은행계좌의 개설, 신용을 통한 원자재 구입, 보고의무를 지닌 관리인 선출권, 세금납부 의무 등을 행사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UBPC는 각 국영농장 내에서 생산조합처럼 움직였다. 이에 따라 거대 단위의 국영농장은 해체되었으며, 대신에 작고 협력적인 단위들 간에는 경쟁하는 시스템이 형성된 것이다. 근로자들은 기존의 국영농장 급여 노동자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전환되어 자신이 속하는 조직의 성과에 따라 자신의 분배 몫이 결정되게 되었다.

정부의 농업개혁 조치에는 유휴토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유휴토지(production idle land)를 활용하여 UBPC를 만들거나, 혹은 유휴토지를 UBPC에 배정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또한 0.5ha 이하의 소규모 토지로써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큰 단위로 통합시키기 힘들 경우에는 은퇴자들에게 할당되거나, 가족들이 자가소비를 위한 토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의 가장 최근의 시행 실태는 명확하지 않지만, 1차경제의 국영농장을 해체하고 2차경제의 협동농과 개인농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새로운 농업조치들에 대한 쿠바 언론들의 논평을 보면, 국영농장의 협동농장으로의 변화는 생산력 증가를 통해서 농작물의 생산실적에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바나 지역의 경우 35,000 pound per caballeria³⁴ → 65,000으로 증가하였다. 또 다른 언론보도를 보면, 전체인구의 대략 1/4정도가 자신들의 식량 수요를 자급자족지역(self-sufficiency plots)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으며, 잉여생산물의 경우는 보다 쉽게 다른 분배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외환 자유화 및 시장 실험

(가) 달러화(Dollarization)

쿠바정부는 1980년대 말까지도 자국민의 외환보유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금지시켰다. 따라서 외환을 획득한 쿠바인들은 국립은행에서 터무니 없이 높은 교환비율로 폐소화와 교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결과,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환은 수년간 암시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다. 외환 암시장은 1990년대 국제관광부문의 확대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다.

수년간의 경험에 기초하여 1993년 2월 쿠바 관광청은 외국호텔과 레스토랑 근무자들이 수고료로 받은 외환을 별도로 지정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수고료로 받은 외환을 관리자

³⁴-1 카바예리아(caballeria) = 33.2에이커.



를 통해서 폐소화와 교환하도록 의무화한 기존의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상적인 배급시스템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제한된 상황에서 취해진 이러한 조치는 외환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이런 상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쿠바인들은 중개업자나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매하려고 하였다.

1993년 쿠바 국립은행은 외환부족과 외환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의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쿠바인들에게 우호적인 외환 교환비율을 적용하고 외환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10개 그룹이 지정되었다. 새로운 해법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발급한 증서를 소지한 지정된 쿠바인들은 이전에는 외국인들만이 이용한 외화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³⁵

제한된 그룹에 한정되었던 외환 사용의 허용은 1993년 7월 26일 카스트로의 연설을 계기로 쿠바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87년의 형법 235조(쿠바시민들의 외환 소유와 외화상점에서의 물품구매의 제한에 관한 조항)의 일부가 폐지되었다. 또한 형법 240조도 수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쿠바시민들은 외환계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쿠바 중앙은행은 새로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해당되는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외환 계정 이외의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 ① 외환증명서 발급을 위한 외국환 교환
- ② 외환으로 거래되는 은행계정의 개설
- ③ 승인된 시설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

³⁵ Jorge F. Pérez-Ló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pp. 161~163.

④ 거래 시점에서 실질적인 우호환율을 적용하여 지역통화와 외환을 교환

(나) 자유농업시장(MLC)의 설립³⁶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완성된 농작물의 국가수매시스템에 따라 개인 농부들은 수확물 중 일정량을 고정된 가격에 정부에 팔아야 한다. 이 일정규모의 할당량을 완수해야만 대출금, 농업 서비스, 종자, 비료, 기타 정부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은 농부 개인이 소비하거나 물물교환, 암시장에서 판매하였고 1980년에 정부의 인가를 받은 MLC에서 대중들에게 판매하였다.

쿠바정부가 MLC을 설치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강제적인 식량 조달시스템에 대해서 농민들이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영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부문과 비국가부문 사이에 경작물의 분업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비국가부문에서는 토마토, 양파, 후추, 옥수수, 담배등과 같은 발작물의 40%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국가부문에서는 감자 쌀, 그리고 감귤류 과일 등의 수확량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바 정부는 1980년 4월, 개인 농부들과 조합원들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농작물이나 국가의 조달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MLC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이 당시 쿠바 정부는 MLC의 운영방침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³⁶- Jorge F. Pérez-Ló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pp. 83~90.

I
II
III
IV
V

- ① 국가조달시스템의 할당량을 초과한 사적 농민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 협동조합에 의한 생산물과 서비스만이 판매가 허용되었다. 또한 국가조달시스템에 해당되지 않은 생산물의 판매도 허용되었으며, 국영농장 범위 내에서도 개인의 텃밭에서 자가 소비를 위해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는 허용되었다. 이 밖에 기타 소토지(도시지역의 텃밭 등)에서의 생산물도 포함되었다.
- ② MLC에 판매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개인 영농자 및 협동조합 생산단위, 신용조합, 서비스 단위에 국한되었다.
- ③ 생산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는 판매대의 임대료를 낮게 부과하였으며, 물건을 포장하거나 운송하는 요금을 낮게 책정하였다. 또한 시장에 참여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었다. 대신 개인 영농자와 신용협동조합 및 서비스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시장 이용 수수료가 부과되었다.
- ④ 생산자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지자체)에서만 판매활동을 하도록 허용되었으며, 해당지역을 벗어나 활동할 경우에는 지방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 ⑤ 시장 건물은 지방당국이 건설하여 운용토록 하였으며, 주요 지침은 국내 상업성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다. 다만, 지방당국은 매대의 임대료와 물건의 포장 등의 가격을 책정할 책임이 주어졌다.
- ⑥ MLC에서는 소고기, 커피, 카카오를 제외한 농축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⑦ MLC에서의 가격은 국가가 규제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 ⑧ 금지된 사항: 지정된 지역 이외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특히

재판매를 위한 구입, 중개업은 사법당국이 고발조치하여 형사 처벌하는 대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였다. 또한 지정된 지역 밖에서 구입하는 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소비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의 대상이었다.

자유농업시장(MLC)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성행하였으며, 1981년에는 200개 이상의 MLC이 생겨났다. MLC 증가로 나타난 긍정적인 현상은 ① 소작농들이 생산한 텃밭 등에서의 농작물이 시장으로 모여 정상적인 분배 채널을 통해 보급된 점, ② 조달 시스템의 수매량이 늘어나고 MLC로 들어가는 물자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소비자들에게도 농작물 공급이 늘어난 점, ③ 농부들과 기타 사람들의 수입이 늘어난 점, ④ 암시장 활동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도시 거주자들이 농작물을 사기 위해 농촌으로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든 점, ⑤ 기본적인 농작물의 소비 수준과 질이 높아진 점, ⑥ 공급이 안정되고 기본적인 일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농작물이 공급됨으로써 소비자들이 편안해진 점 등이다.

MLC는 농산물의 공급량과 다양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강화를 초래하였고 결국에는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3가지 주요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① MLC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점, ② 농부들이 국가조달시스템에서 물건을 빼들려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MLC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한 점, ③ 농부들보다는 중개인들이 MLC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은 점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조달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개인들이 MLC를 통해 더 많이 이익을 취하고 이것이 농부들뿐 아니라

I
II
III
IV
V

소비자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1982년 5월 카스트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비판하고 세금인상을 포함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1982년 9월에 발표된 법령을 통해서 MLC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취하였다.

- ① 중개인들을 MLC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소농민협회(ANAP) 소속이 아닌 영농인들은 배제하도록 하였다.
- ② MLC 참여를 위해서는 국가수매 책임량을 완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 ③ 시장에서 판매액의 20%를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사한 시장을 만들어 MLC와 경쟁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는 정부에서 생산하는, 배급되지 않는 상품을 파는 국영상점(ferias del agro)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식품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계획적으로 단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MLC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었다.

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LC는 1980년대 전반까지 유지되었으며, MLC를 통한 갈등(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못한 사람 사이와, 참여한 사람과 소비자 사이에도)도 지속되었다. MLC을 통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 ① MLC를 통해서 암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의 양이 증가하였는데, 그 가격은 여전히 일반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 ② 식량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영농장에 배정된 자원들이 사적 영농부분으로 유출되었다.
- ③ 공식적으로는 MLC를 통해 노동자와 소규모 영농인들과의 유

대관계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긴장이 증대되고 있었다.

④ 정부는 MLC가 암시장의 중개인 활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⑤ MLC에 참여한 판매자들이 추가적인 사적 소득을 획득하여 의심스러운 부문에 대해 소비를 늘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속되자, 1986년 5월 카스트로 대통령은 MLC를 항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에는 다수의 국영상점(ferias del agro)을 개설하여 MLC를 대체하였고 국가의 조달시스템은 보조적인 시스템(Frutas Selectas)을 통해 수매가를 높여서 양질의 상품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여기에서 확보한 상품은 국영상점에서 판매하였다.

(다) 예술품시장(MA)의 설치³⁷

국가가 공급하는 소비재의 단조로움과 희소성 때문에 공식(계획)경제 외부에서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념품, 목제품, 그림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수공업품은 사적인 생산활동이 정부의 생산품을 보완하였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비공식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이 공식경제에서 생산한 제품과 경쟁하기도 하였다.

1978년 7월, 쿠바정부는 국가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³⁷- Jorge F. Pérez-Ló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pp. 91~93.

I
II
III
IV
V

경제활동을 허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대신 소규모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었고³⁸, 정규 직업을 유지하고 있도록 하였다.³⁹ 또한 아주 ‘기본적인’ 도구와 장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집에서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자재 획득에 있어서는 국영 기업이 우선권을 가졌고, 생산품을 대중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의 분배단위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쿠바 정부는 1980년 MLC을 설립하면서, 개별 장인들이 사적으로 만든 물건들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완화하여 예술품시장(MA)을 설치하였다. 이 시장에서는 가격에 대해 정부가 통제하지 않았으며, 집에서 만든 물건들을 생산자들이 직접적으로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예술품시장은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재를 제공함으로써 실용적이고 스타일이 좋은 물건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켰다. 예술품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정부는 유행이나 소비자의 취향을 인식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1982년부터는 예술품시장이 공식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1986년에는 MLC와 마찬가지로 MA도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순적으로 예술품시장을 성공시켰던 원인이었다.

여기에는, 첫째, 판매된 품목이 단순한 수공예품의 범위를 넘어섰고(목조, 그림, 보석류, 벽장식, 골동품 등), 배급제도에 속해 있는 옷, 신발, 가방 등도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³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노동은 허용하였다.

³⁹ 은퇴자는 예외를 적용하였다.

둘째, MA에서 원하는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유사한 물건을 생산하는 국가시스템의 실패와 문제점을 깨닫게 하였다.

셋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국가부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중국⁴⁰

가. 역사적 배경과 2차경제의 위상 변화

(1) 신민주주의 개혁과 완전한 체제전환(1949~1957년)

1949년 중국공산당의 승리 이후, 긴 전쟁이 생산의 기초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여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었다. 여기에서 경제발전의 기반 구축은 과거 농민경제에서 산업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고,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 공산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산당은 소위 ‘신민주주의 개혁’이라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외국자본과 결탁한 자본가들에게서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주의 산업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농촌지역에서는 부유한 지주가 소유했던 토지를 가난한 소작인들에게 분배했다. 이러한 개혁 조치의 결과로 이 기간(1949~1952년)동안 경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산업, 소매업, 도매업, 교통 등을 포함한 국가경제의 주요 부문들을 통제하게 되었다.

⁴⁰ Xin Ren, “The Second Economy in Socialist China,” pp. 140~156.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추진한 주요 대상은 사적 경제부문이었다. 그 결과 1953~1957년의 기간 동안 사적경제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하락하여 1953년 79%에서 1957년에는 7% 수준으로 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력 역시 거의 대부분 사적 부문에서 국영기업이나 협동단체로 이동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 내부에는 향후 진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사회주의 혁명을 지속하는데 당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극좌파주의자들의 주장과 국가경제의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적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우파주의자들의 견해로 나뉜 것이다. 그러나 논쟁의 결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강조한 우파주의자들이 패배하면서 그들의 견해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2) 대약진운동과 통합 국면(1958~1965년)

경제의 진로와 비전에 대한 중국 공산당 내부의 이념적 논쟁은 1957년 극좌파(마오주의자)의 승리로 마감하면서 농촌의 협동화사업을 이끈 ‘대약진운동(the Great Leap Forward)’을 추진하였다. 이 운동은 공업의 근대화를 위해 공업과 건설사업에서 자발적으로 대중을 동원하고, 농촌에서 ‘모든 토지를 공유하고, 매매는 금지하는’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인민공사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⁴¹ 그 결과 2년 동안에 농촌 가구의 96.3%가 협동화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958년에는 인민공사가 중국 전역에 설립되었다. 순전히 인민들의 노동력으로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

⁴¹ 인민공사는 생산대, 생산대대, 인민공사로 이어지는 3차원의 공동소유 체제로 구성되며, 경제와 행정의 핵심단위 역할을 하였다.

아래 시작된 대약진운동은 식량을 증산시킬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 진행되었으나, 1959년과 1960년의 식량 위기로 인해 결국 3년 동안 약 4천만 명의 아사자를 내는 파국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다. 식량생산을 기초로 수립된 공업화 계획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59년에는 급진적인 경제정책을 다소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개인의 생산의지를 북돋기 위한 정책이 도입된 것이다. 그 결과 집, 의복, 침구류·가구류의 가재도구 등의 소유를 허용하였으며, 은행에 맡긴 저금과 신용을 인민공사에 가입한 이후에도 가족의 소유물로 인정하였다. 또한 자신의 집 주변의 나무와 소규모 연장, 작은 가축과 그릇류 등의 소유권도 허용하였으며, 사적인 부업도 협동작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한 요소로 인정하였다. 또한 사적으로 생산한 물건을 자유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다. 1961년 기준으로, 농촌에 40,000개에 달하는 자유시장이 설치되었으며, 이곳에서 농촌 생산량의 25%가 거래된 것으로 보고되었다.⁴²

이러한 조치는 농촌지역에서 합법적인 2차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과 도시에서 2차경제가 다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파적 인식을 지닌 지도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였다. 등소평의 유명한 발언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개인사업을 허용할 수도 있다. 고양이 가 쥐를 잘 잡는다면, 털의 색깔이 검은가 흰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⁴³은 중국의 경제발전 우선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수정 조치는 부분적으

⁴²- W. Kraus,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ew York: Springer-Verlag), 1982.

⁴³- 등소평은 1979년 미국 방문 후 黑猫白猫論 제창하였다.

I
II
III
IV
V

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의 실패와 그에 뒤따른 조정 정책은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3) 문화대혁명과 혼돈의 시기(1966~1978년)

그러나 우파적 정책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러한 노력은 중단되었던 것이다. 이 혁명의 목표는 당, 정부, 군대, 그리고 사회에서 자본주의 길을 걷는 반혁명계급을 타파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프롤레타리아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부단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는 ‘계속혁명’론에 입각하여, 홍위병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혁명의 와중에 유소기나 등소평과 같이 우파적 실용주의자들은 제거되었다. 지식인과 학생들도 농촌과 공장에 내보내져 프롤레타리아화 되도록 강요받았다. 문화혁명이 더욱 극좌화된 이유로는 당시 전개되던 중국과 소련간의 이념분쟁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문화대혁명은 희생자만 해도 1백만 명에 가까운 정도로 파괴적이었으며, 목표 달성보다는 극좌적 모험주의와 권력투쟁으로 변질되면서, 중국에 대재앙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도 다시 붕괴 직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시의 ‘합작사’들은 또 다시 와해되었다. 사적 경제와 관련된 행위들이 자본주의 꼬나풀, 공산혁명의 적, 자본주의의 침병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개인 기업들이 취득한 이득은 국가에 반납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시설은 국영기업으로 전환시켰다. 1966년부터 1970년 동안 베이징에서 미술품과 공예품을 생산하는 5만 명이상의 수세공업자들이 작업 중단을 요구받았으며, 다른 물건을 생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통공예품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⁴⁴

농촌지역에서는 이전에 허용되었던 사영지(소토지)를 인민공사로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자유시장은 폐쇄되었다. 어떤 형태의 개인적인 경제활동도 반혁명적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1979년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4) 경제개혁(1979~1980년대)

1978년 12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등소평체제가 지향한 새로운 경제개혁의 목표는 ① 인민공사의 해체, 농민들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국가와 계약재배 실시, ② 공공소유제의 분권화, 당의 정치적 권한과 경영권의 분리 등을 통해서 계획·생산·분배·판매 부문에서 산업생산단위에게 더 많은 자율권 부여, ③ 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 허용, 사적 기업과 협동기업, 국영기업과 외국 투자 등의 공존 촉진 등이었다.

등소평체제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농업의 현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민공사체제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인민공사는 행정단위로서의 향(鄉)정부와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가를 원칙으로 하는 농·공·상 연합기업 등의 경제조직으로 분리, 해체되었다. 또한 생산대의 집단경작방식을 대신하여 가족단위의 생산책임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다작경영, 전문경영으로의 전환이 촉진되었으며, 열심히 일해서 부유해진 농민이 새로운 시대의 농민상으로 찬양되기 시작

⁴⁴- X. Liang, "The Rehabilitation of Collective Enterprises in Urban Areas," in L. Wei and A. Chao, *China's Economic Reform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2).

I
II
III
IV
V

했다. 계획기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원리를 대폭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집단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실업율은 1979년 1.9%로 감소되었다. 또한 부족한 자본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영관리의 신기술을 배우기 위한 개방정책도 추진되었다.⁴⁵

그러나 1980년대의 경제개혁이 경제체제를 바꾸지는 않았다. 농장·공장·광산과 같은 주요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있었다. 국가는 개인이나 합작기관에게 국가재산의 사용권을 임대해 줄 뿐이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과 비국영기업의 차별화가 발생하여, 거의 4백 5천만 명에 달하는 사적부문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 의료 보장, 연금, 직업 보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국사회의 변방에 위치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경제는 소규모 생산과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1980년대 후반 중국에서 2차경제는 타인의 부러움과 지방 당 관료의 관찰 대상이 되었다. 사적기업이 번성할 경우에는 이익의 1/2이나 1/3을 조세로 징수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 기업을 국영산업으로 흡수해 버렸다. 이와 함께 사적기업들이 3명 이상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 80년대 2차경제의 위상과 경제적 기능 그리고 부작용

(1) 경제적 위상

모택동사상에서 경제는 항상 정치보다 하위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상에 따라서, 모택동은 중국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채 대

⁴⁵ 1980년에 경제특별구, 1984년에 경제기술개발구의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서방의 자본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외국합작기업을 추진하였다.

약진 정책, 문화 혁명과 같은 여러 정치적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참한 경제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차경제의 위상도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그러한 변화는 국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모택동의 극단적인 좌파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 간의 논쟁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0~1970년대 중국에서의 2차경제는 두가지 이유에서 극단적인 좌파주의자들의 모택동사상과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첫번째는 마르크스의 경제법칙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력이 생산관계를 결정하고,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성격에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모택동사상은 생산의 개선된 관계(즉, 생산수단에 대한 공공소유)가 생산력의 성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착취계급의 부산물인 개인소유는 사회주의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성공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모택동의 기준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아니라 공동소유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수단의 소유권에 대한 지속적인 혁명이 일차적 임무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적인 임무에서 비롯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임무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사람(즉, 공산주의자)’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구식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일 외에도, 사회주의에 적응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이 계급투쟁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반면에 사적경제는 오랫동안 자본주의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잠재적인 유혹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모택동에게 사적경제에 대한 캠페인은 단순히 경제적 논쟁이 아닌 정치적 투쟁의 일부가 된 것이다. 사적경제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이해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I
II
III
IV
V

자본주의적 활동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2차경제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은 모택동이 사망하면서 퇴색되기 시작했으며, 이후의 경제개혁을 통해 사적경제는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그러나 비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본주의자로 낙인찍힐까 하는 두려움, 언제든 국가가 가져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1980년대 말까지는 민간부문의 기업가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다.

(2) 경제적 기능

공식경제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2차경제는 생산과 소비 분야에서 합법적·비합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중국에서의 경제적 전통과 시장의 미발달로 인하여, 1980년대까지는 물물교환이 가장 일반적인 2차경제 활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사람들이 시장에 가는 이유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물교환을 통해서 개인적인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을 통해서 정부의 공급과 일반 주민들의 수요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개인사업이나 합작사업이 운영의 측면에서 탄력성과 다양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합작공장의 많은 부분들이 국영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많은 국영기업들이 자신들의 자회사를 합작기업의 형태로 설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개인기업과 합작기업들은 대규모 국영기업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원자재의 순환 고리의 결함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2차경제는 공식적인 공급품이 부족하거나 판매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생산물의 공급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농번기에는 살충제나 비료와 같은 농자재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 때 이러한 물건에 접근할 수 있는 거간꾼이 필요하게 된다. 이들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시장가격으로) 구입해서 적당한 이윤을 더해서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2차경제의 이런 중간 거간꾼의 활동은 불법이다. 일반적으로 급하게 어떤 물건이 필요할 경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계절적인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식 공급을 기다리면서 그해 농사를 망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결국 필요한 공급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배급기관에 뇌물을 주고 뒷문으로 물건을 빼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경제범죄의 만연

경제개혁을 통해서 시장 기능이 도입되면서 2차경제의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경제범죄도 증가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빠르게 증가한 경제범죄는 크게 일반인이 저지른 범죄와 엘리트그룹이 저지른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반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는 밀수, 불법 무역, 강도, 사기, 뇌물 수수, 부패 등으로 구성된다. 공식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으로 밀수된 물건의 총 가치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3년 동안 2천만 위안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홍콩으로 밀수한 금, 은, 기타 귀금속의 총 가치는 1980년부터 1983년까지 6억 불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0,000 위안 이상이 연루된 불법무역 사례가 1980년부터 1981년까지 150%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⁶ 공공 자산을 훔친

⁴⁶ T. O-Yang, Q. Cua and y. Lei, *Serious Crimes in the Economic Field*

I
II
III
IV
V

절도의 경우는 전체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금, 산업 원료, 전자제품, 국영 박물관의 미술품 등이 절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훔친 물건은 보통 면허를 가진 개인 소매점이나 불법적인 암시장을 통해서 판매된다. 1980년대 들어와 일반인들의 경제범죄가 증가하자 정부는 1982년 초 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1982년과 1986년 사이, 수천 개의 사례가 발견되었고 대부분의 범인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되었다. 그러나 경제 범죄의 수는 계속 늘어나, 1985년부터 1986년까지 55.5% 늘어났다고 한다.⁴⁷

둘째는, 엘리트의 경제 범죄로, 1982년 총 22,331개의 경제 범죄가 법정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중 5,243개가 엘리트층이 관련되어 있는 독직과 횡령, 사기 등이었다. 이것은 1982년 한 해 동안 재판을 받은 전체 경제 범죄의 23.4%를 차지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은행에서 받은 대부의 70%가 대출승인 신청을 담당하는 정당의 다양한 지도자 집단을 통해 밀수 무역에 불법적으로 투자되었다고 한다.⁴⁸

경제 범죄와 관련된 정당 내부의 스캔들과 정당에 대한 대중적인 신임도 저하로 인하여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층은 구성원들이 저지르는 경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1982년 이후 상당수 공산당의 중하위급 관리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처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경제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단지 정당에서 쫓겨나고 직위 해제가 되는 정도에서 마무리된다. 중국 사람들은 ‘형사

(Beijing: Law Press, 1984).

47. 『인민일보』, 1987년 4월 7일.

48. T. O-Yang, Q. Cua and y. Lei, *Serious Crimes in the Economic Field*.

적인 처벌은 상급 관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랜 봉건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다. 2차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1) 정치적인 억압

사적경제가 공식적으로 마르크스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적부문은 엄청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특히 자본주의의 잔재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기간에는 더욱 심했다. 모택동의 좌파주의 체제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구성원으로 증명되면 최고의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사람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난한지 또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지 여부였다. 이러한 논리는 프롤레타리아 계층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동일시하였으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옛 혁명 집단을 제외하고)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식적인 인식은 ‘당신이 가난할수록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정치적인 억압은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척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편견과 결합되어 있다. 사회주의 중국은 단일한 사회

⁴⁹ 중국의 중앙당은 부패방지를 위한 기구를 설립(1978년)하기도 하였다. 이 기구의 주요 기능은 정당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사하고 (주목을 받게 되는) 형사적인 사법 제도를 통하지 않고 그들의 범죄를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종 심각한 경제 범죄를 저지른 엘리트 범인들도 단순히 해고되거나 다른 자리로 파견하는 등의 처벌을 받을 뿐이다. 법은 엘리트층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처벌하고 판결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로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명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극단적인 좌파주의정권 동안,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자로 낙인찍혔으며 공동체에서 고립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의 가족들도 공동체에서 연좌되거나 차별을 받았다.

(2) 경제적 및 사회적 차별

경제개혁이 진행된 1980년대까지도 2차경제는 공식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차별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개인 기업가들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국가는 면허를 갖고 있는 개인 생산자들에게는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암시장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공급 원천이 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도 개인 기업가들은 여전히 국가의 통합과 몰수정책에 취약한 상태였다. 과거의 어려웠던 기간과 비교할 때, 1980년대 말의 경제개혁은 개인 기업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따른 합법화 조치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의 산물일 뿐이다. 개인 기업들의 ‘크게 개선된’ 상황은 법으로 보장받기보다는 경제개혁 정책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었다.

1980년대의 사회정책에도 눈에 띄는 제약들이 있다. 대부분의 개인 기업가들, 농촌 거주자들과 가족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국가는 국영 부문의 피고용인들에게는 완전한 의료보험을 제공하지만 사적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농부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개인 노동자들 가족의 경우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차별을 받는데, 예를 들면 국가가 운영하는 탁아시설에 들어갈 수 없었다. 1980년 중

양정부가 도시에서 기본 식료품을 제외한 식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국가 또는 집단 소유 단위의 직원들인 도시 거주자들은 월급을 보전할 수 있게 5위안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사적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회복지 혜택이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그 직원들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개인 노동자들은 모든 사회복지 체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실제로 그들은 이류 시민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3) 처벌과 통제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형법 적용의 범위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하였다. 경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특권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는다. 엘리트 범죄자들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처벌 절차를 통하는 대신, 그들의 지위를 없애는 것이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형법에 의한 처벌절차를 밟게 된다.

이처럼 일반인 범죄자들은 종종 국가 차원의 ‘반(反) 범죄 캠페인’ 또는 범죄 단속의 대상이 된다. 1980년대 경제개혁의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 범죄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중국공산당의 지도층은 경제범죄에 대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캠페인은 경제적 일탈과 혼란을 통제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당 내부의 세력투쟁에서 정치적인 반대자나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중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I
II
III
IV
V

IV.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 (2차경제)의 주요 특징



1. 북한에서의 시장화 현상(2차경제)

가. 시장화 현상(2차경제)의 기본 개념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주의 국가경제를 설명하는 기본 틀은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계획경제부문과 비공식적인 경제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공식적인 경제를 설명하는 용어로 ‘공식경제’, ‘1차경제’, ‘계획경제’ 등이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국가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설명하는 용어로 ‘비공식경제’, ‘2차경제’, ‘암시장경제’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시장적 현상들은 주로 암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형태의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국가가 이러한 활동 중 일부분을 묵인하거나, 종종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허용함에 따라서 소위, 합법적 2차경제의 영역이 형성되기도 하고, 공식적인 1차경제 내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기도 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그런 점에서 분류의 기준이 기존의 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장화 현상’이라는 차원에서 기준은 특정 경제활동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국가의 계획경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화 영역’과 전통적인 ‘비시장화(계획)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경제 내에 있는 특정 부문에 대한 경제개혁 또는 제도개선의 결과로 시장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면⁵⁰ 그 부문은 ‘시장화 영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⁵⁰ 여기에서는 시장화 영역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특정부분에 시장기능이 어느 수준

I
II
III
IV
V

것이다. 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묵인 등을 통해서 실지로 공식경제 내에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작동한다면, 그것도 ‘시장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화 요소의 작동 여부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경제 내부에도 시장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합법적인 부문과 비합법적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IV-1 사회주의 국가경제에서 나타나는 시장화 현상의 영역

		국가의 공식경제 내부		국가의 공식경제 외부(비공식경제)	
대외 부문	비시장화		합법적 시장화	불법적 시장화	
	합법적 시장화	불법적 시장화			

* 점선으로 구성된 사각형은 대외부문을 의미한다.

<표 IV-1>의 분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장화’의 영역은 최소한 다음의 2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제활동 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① 국가의 연간계획 목표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경제활동 영역, ②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영역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첫

으로 도입되어야 하는지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가 사전에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번째 조건은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은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장화 현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목적이 국가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거나, 또는 경제활동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재정계획에 반영되면 국가 계획경제 내부의 시장화 현상이라고 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비공식경제(계획경제 외부)의 시장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북한경제 시장화 현상의 유형

북한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은 그동안 대부분 계획경제 밖에서 농민시장과 소규모 암시장의 형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장기화된 경제난을 거치면서 국가경제의 자원배분과 분배기능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 도달하면서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비공식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었다. 여기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2002년 7·1조치 이후 계획경제 틀 내부에서도 시장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국가 공식경제 내의 합법적인 시장화 현상

국가의 공식적인 경제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시장화 현상의 영역을 규정하는 작업은 조금 복잡하다. 국가경제의 계획부문과의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한 종합시장을 운영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시장 안에 설치된 매대에

I

II

III

IV

V

입주한 개인이나 기업 또는 협동단체는 품목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사용료’와 소득의 일정규모를 ‘국가납부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정부가 시장관리소를 설치하여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국영기업소의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시장이 계획경제의 한 부분으로 제도적으로 편입된 것이다.

1984년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계기로 활성화된 가내작업반의 활동 중에서 생산·판매 및 이익의 배분 행태는 국가의 공식경제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8·3인민소비품은 공장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부산물, 유휴자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생활용품으로, 이를 생산하는 가내작업반은 전업주부나 연로자, 지체장애인 등 유휴노동력을 대상으로 조직된다. 가내작업반은 공장별로 ‘직속작업반’이 그리고 주민들이 사는 구역 마다 ‘가내작업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동·인민반에도 가내작업반이 조직되어 있다.⁵¹ 이곳에서 생산된 물건들은 각 지역의 ‘8·3인민소비품상점’ 또는 ‘직매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판매된다. 2008년 기준으로, 8·3소비품 생산액 과제를 184%, 유통액 과제는 246% 달성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생산 품목도 해마다 1.2~1.3배 증가하여 2008년의 경우 1984년에 비해 약 19배인 수천 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들 작업반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매출액에서 투입된 노동과 출자 몫에 따라 분배가 결정되고, 판매이익의 5~

⁵¹ 북한에서 가내작업반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6월,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대책’이라는 결정을 채택한 이후부터로 알려지고 있다. 가내 작업반은 일반적으로 도·시·군의 지방공장과 연결되어 활동하는데 가내작업반장을 겸한 인민반장이 해당 단체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일거리를 받아서 작업반원들에게 분배하여 주고, 작업공정이 끝난 제품은 회수해간다.

10%는 일종의 거래세 형태로 당국에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판매이윤의 일정비율을 국가에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계획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2) 국가 공식경제 내의 불법적인 시장화 현상

계획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시장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는 원자재 거래행위를 꼽을 수 있다. 북한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소와 공장들이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사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를 조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적인 활동에는 장마당을 통한 조달은 물론이고 다른 국영공장이나 기업소에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업소간의 뒷거래가 관행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뒷거래는 종종 해당 간부들의 사적인 이익 추구행위와 연결되기도 한다고 한다.

불법적인 시장화 현상의 또 다른 주요 형태는 자금력이나 사업수완이 있는 개인이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서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개인이 국가기관 산하의 기업소 명의로 사업소(예를 들면, 수산사업소)를 차려 놓고 개인사업을 하고 얻은 이익의 일부를 명의를 빌려준 기업소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취하는 것이다. 이 밖에 기업소의 관리자가 유명노동자를 등록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유명노동자는 이름만 걸어놓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⁵³

⁵² 『조선신보』, 2009년 2월 28일.

국가부문으로부터의 착복 및 뒷거래도 전형적인 불법 시장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직장에서 생산물이나 원자재, 심지어는 설비부품 등을 빼돌리거나 유통 과정에서 상품의 일부를 유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직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간부층도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빠져 나온 물품들은 가내공업용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관련 유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한다.

(3) 국가 공식경제 밖에서의 합법적인 시장화 현상

국가의 공식적인 계획경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시장화 현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한 종합시장 내에서의 개인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사용료와 소득세를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계획체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종합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은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계획체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적인 시장화 현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국영농장원 및 협동농장원들이 개인 소토지(텃밭, 부업밭, 폐기밭 등)를 경작하여 여기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이 경제활동의 문제는 사적인 농산물 생산활동이 공식 경제활동에서보다 더 큰 이익

53. 산업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나타나는 이유는, 관리자들이 중앙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목표치가 관리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성과에 대한 거짓보고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을 창출하기 때문에 종종 합법의 경계를 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 국가 공식경제 밖에서의 불법적인 시장화 현상

여기에는 허가받지 않는 사적 생산과 판매, 암시장, 밀수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음식류의 생산은 당국이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이 약간의 자본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음식류의 생산과 판매는 도시지역의 시장 주변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종합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 거래되는 암시장에서는 매우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로 기존에 합법적이었거나 공식적으로 거래가 묵인되었던 품목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불법적인 거래의 범주가 확대됨과 동시에 암시장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이 밖에도 종합시장에 정식으로 진입할 수 없는 극빈층의 상인들은 시장 주변에서 판매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단속반의 주요 단속대상으로써 단속을 피하기면서 골목 등지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메뚜기장,’ ‘골목장’이 생겨났다. 이 ‘메뚜기장’과 ‘골목장’에서는 시장이용료와 국가납부금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세한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밀무역은 주로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물물교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밀무역인데, 북한의 유색 금속이나 농수산물, 약재를 중국의 식량이나 생필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외환암거래와 주택거래도 불법적인 경

I
II
III
IV
V

제활동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외환 암거래의 경우에는 국가가 ‘외화교환소’를 설치하여 암시장환율로 외화를 교환해주면서 외환암시장의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주택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구가옥이라고 일컬어지는 개인소유 주택과 개인주택펀드로 건설된 극소수 신가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의 이동이나 경제난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음성적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주요 특징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은 최소한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된 2009년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영역과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첫째, 국가의 공식적인 계획부문과 비공식부문이 시장화 현상을 통해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둘째, 공식적인 계획부문에서의 시장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공식경제 영역에서 시장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90년대부터 심화되고 장기화한 경제난 외증에서 국가의 공식경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개별기업소와 공장들이 독자적인 자구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와 2003년 5월 ‘종합시장운영에관한조치’ 등을 통해 시장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상설시장이 개설된 것을 계기로 시장활동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당국이 국가의 계획시스템에 의한 공식경제의 운영체계가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시장을 통한 자력갱생이 일반화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와 동시에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시장의 확산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한편으로는 시장의 존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하면 시장메커니즘의 장점을 도입하여 빈사상태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화 현상의 확산이 사회주의체제의 근간,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으로 인식하고 시장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이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인 시장의 경우에는 인허가 수수료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가격의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금지품목을 설정하는 방식을 동원하여 합법적인 시장활동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시장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교양사업을 통해서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강화될수록 부정부패 현상이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시장화 현상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 예를 들면 구역 당, 인민위원회, 군부대 초소 등의 단위들이 시장활동에 기생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받아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뒤를 봐주는 방식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I

II

III

IV

V

2. 북한경제 시장화 현상의 발전과정

가.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의 확산 과정

(1) 급진적 전환단계: 시장세력 제거를 통한 사회주의 개조작업

해방이후 북한의 사회주의적 개조 작업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 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1946년 3월 ‘임시위원회’는 11개 당면과업과 20개 정치강령을 발표하였다. 20개 정강은 기본권 보장, 농지개혁, 산업의 국유화와 개인상공업의 장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북한은 이 강령에 의거하여 ‘민주개혁’ 즉,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개혁조치는 ‘토지개혁법령’(1946.3.5), ‘주요산업국유화법령’(1946.8.10), ‘로동법령’(1946.6.24) 등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북한이 가장 먼저 실시한 토지개혁사업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단행되었다. 북한이 가장 먼저 토지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중앙집권적 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경제는 하층 농민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소규모 개인농업이 주를 이루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농촌의 발전과 농민생활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농업의 집단화를 대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1946년 8월 북한은 ‘주요산업국유화법령’을 통해서 모든 공장·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상업, 문화기관 등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민간부문 등이 소유하고 있던 1,034개의 산업기

관이 몰수되어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되었으며, 1946년 공업총생산액 중 국영부분의 비중은 72.4%를 차지하고 사회주의적 경제가 지배적인 형태로 되었다. 그러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규모의 공장, 기업소 및 상업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이전은 물론 휴전 이후까지도 부족한 생활필수품의 보충을 위해서 장려, 활용, 제한 정책을 번갈아 취해오다가, 결국에는 이들을 국·공유화시켰다.

농업부분의 집단화 조치는 1954년부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56년 말 기준으로 농촌에서 협동화 비율은 전체 농가 호수의 80.9%, 경지면적의 77.9%를 차지하였다.⁵⁴ 북한에서 농업협동화는 1958년 8월에 100% 완료된 것으로 발표되었는바, 북한은 이를 기점으로 농업집단화와 함께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도 완료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950년까지 기존의 재래시장이 ‘인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민시장’은 통상 1개 시·군에 3~4개소가 설치되었고, 매일 개장했으며, 읍·면 단위의 농촌에서는 3일장이나, 5일장의 형태로 개장되었다. 이런 재래시장은 1950년부터 ‘농촌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여유 농산물과 개인상공업에서 생산한 물품들이 거래되었다.

결국,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 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의 개인 상공업이나 시장참여 등의 경제활동을 협동화 작업을 통해 국영부분으로 점차 흡수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⁵⁴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 40.

I
II
III
IV
V

(2) 독점화 단계

(가) 농민시장의 허용: 시장화의 잠재력 배태(胚胎)

북한은 공산정권을 수립한 직후 실시한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1954년부터 시행한 농업의 집단화 작업을 통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였다. 협동조합으로의 집단화 작업을 완료한 1958년, 북한당국은 기존의 ‘농촌시장’⁵⁵을 ‘농민시장’으로 개칭하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거래품목도 채소나 부식물 등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⁵⁶

북한에서 ‘농민시장’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북한은 농민시장이 ‘자본주의적 잔재를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라고 지적하면서도, “아직 국가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들, 특히 소소한 일용품들과 일부 부식물품들을 다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농민시장을 리용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⁵⁸

이 ‘농민시장’은 농민들의 농산물의 반출과 소비자들의 상품 구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도시들과 각 군에 ‘두어곳씩’ 설치하였으며, 협

55. 북한지역에서 해방 직후에는 ‘인민시장’이라는 명칭의 기존의 재래식 시장이 존재했으며, 이 ‘인민시장’은 1950년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1950년에 ‘농촌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잉여농산물과 개인상공업 부문의 생산물이 거래되었다.

56. 초기 단계에 조직된 협동조합은 1962년 리 단위의 협동농장으로 개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7.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 405~407.

58. 위의 책, p. 405.

동농장이 쉬는 날에 개장을 하도록 하였다. 이 농민시장에는 “국영공업품상점 분점, 편의망도 설치되어 농민들의 편의를 돌봐주고 있으며 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업시설 및 도구들도 갖추어져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⁹

1969년에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매일장을 폐지하고 10일장으로 전환하였으며 1군에 1개소만 설치하고, 주요 도시 중심지역에 있던 시장은 폐쇄하고 변두리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은 국가공급이 부족한 식량과 소비재를 조달하는 장소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경제부문에 생산하는 소비재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농민시장이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사적인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0년에 소비재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국영상업유통망의 기능이 저하되자 이는 농민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되었으며, 그 결과 1982년에는 농민시장이 상설화되기도 하였다.⁶⁰

⁵⁹- 위의 책, p. 406.

⁶⁰- 정정길·전창곤,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 분석,” 『농촌경제』 제23권 2호 (2000), p. 105.

표 IV-2 농민시장의 시기별 명칭 및 운영방식 변화

기 간	명 칭	운영 방식
해방~1950년	인민시장	상설시장(도시) 3일장 또는 5일장(농촌)
1950~1958년	농촌시장	매일장(도시) 3일 또는 5일장(농촌)
1958~1969년	농민시장	10일장(매월 1, 11, 21일)
1969~1982년	농민시장	10일장(농촌지역) 주요 도시 중심지역의 시장은 폐쇄(변두리로 이전)
1982~1987년	농민시장	상설시장화(1982년) 1985년 5월부터 숫자 확대
1987~1990년대 초	농민시장 (장마당, 야시장 등 명칭 등장)	7일장으로 전환 후 다시 10일장으로 변경
1993~2003년	농민시장 (장마당, 야시장, 자유시장 등)	매일장(상설시장)으로 전환(1993년)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심화로 농민시장 기능이 급격히 강화

* 출처: 정정길·전창근,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 분석,” 『농촌경제』 제23권 2호 (2000), p. 105.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당국은 경제상황에 따라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 완화하는 정책을 반복해 왔다.⁶¹ 결국 1993년, 매일장으로 상설화된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국가차원의 경제관리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농민시장은 일반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⁶²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1984년 가내 부업을 장려하는 ‘8·3인민소

⁶¹ 식량사정이 호전된 1980년대 중반에는 7일장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10일장으로 변경하였다가 1993년에 다시 매일장으로 전환하였다. 위의 글 참조.

⁶² 1993년부터는 쌀, 옥수수 등 곡물류와 공산품까지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품생산운동'을 통해 부족한 생필품 공급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간단한 식품(술, 떡 등) 생산은 물론 의류 및 신발의 생산 및 수선, 목수일 등 각종 개인 부업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시장화 현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7년 경부터는 기관·기업소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1인당 50여 평 규모의 “부업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적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⁶³

(나) 장마당의 형성: 시장화 저변의 확대

원래 농민시장에서는 간단한 일용품과 식료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산물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식량과 공산품의 거래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급격하게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공식경제는 거의 붕괴되어 일반주민들은 더이상 국가의 배급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아사자가 속출하게 되었으나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결국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통제 시스템도 마비 상태에 이르자, 일반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는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체계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식량과 공산품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주민들은 더 이상 정부가 관리하던 과거의 농민시장

⁶³ ‘부업밭’은 직장이 당국으로부터 배정 받은 야산을 소속 노동자에게 분배하여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 틀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기존의 농민시장이 ‘장마당’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⁶⁴ 처음에는 개인들이 사용한 것을 장마당에 내다팔거나 식품류와 농토산물의 거래가 주를 이루었으며, 점차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나 기업소의 설비나 자재를 훔쳐 파는 암거래도 증가하였다.

장마당을 통해서 사적인 거래가 확대된 데에는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밀무역을 통한 중국물자의 대규모 반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1990년대 초에 도입된 ‘새로운 무역체계’가 밀무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무역체계’에서는 그동안 국가의 무역기구가 전담하던 대외무역을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독자적인 무역기구를 갖추고 직접적으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장마당을 통한 사적인 경제활동의 증가 현상은 단순히 밀무역의 증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개인들이 국가가 포기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분야의 사적인 경제활동에 직접 뛰어들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북한경제 내부에서 시장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개인들의 사적인 생산활동은 식품개발 및 생산에서 출발하였으며, 이어 국가에서 보장해주던 생필품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개인들은 국가기관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생필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공장이나 기업소 또는 외화별이기관들을 통해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와 설비를 구한 뒤, 이를 수공업방식으로

⁶⁴ 전통적인 의미의 ‘농민시장’은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공하여 상품으로 만든 뒤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당시에 개인들이 생산한 주요 물품들로는 변압기, 식칼, 식기류 등이 있었다. 이처럼 조악한 형태와 수준의 생필품 제조가 진행되고 유통구조가 형성되면서 생산제품의 질적 수준이 점차 향상되었고 이를 계기로 몇몇 개인들은 소규모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상업자본이 형성되자 기존에 국가가 생산하던 제조품 대부분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등 개인들의 시장을 통한 활동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개인들이 자금력과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업소나 공장의 설비나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산하던 사람들이 축적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장·기업소의 전력과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함흥시 경우 공장, 기업소를 활용하여 소규모로 생산한 품목은 주로 식료품과 일부 화학제품⁶⁵이었다고 한다.

(3) 개혁 단계⁶⁶: ‘7·1 조치’ 발표와 종합시장 설치:

시장의 제도권 진입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⁶⁵ 함남지역의 중소규모 공장 및 가정들에서 사적으로 생산한 화학제품은 간단한 장치와 시설로 생산이 가능한 중조(중국에서 수입한 탄산소다를 원료로 생산), 식초(폐기된 초산 혼합물로부터 정제 분리), 및 유기용매(프랑스에서 수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열분류하여 생산)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⁶⁶ 북한의 7·1조치를 개혁작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개혁단계로 보는 것은 2장에서 검토한 로스의 분류에 근거할 경우 개혁단계에 해당되는 조치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
II
III
IV
V

전기가 마련된 사건은 2002년 7월 1일에 발표된 ‘경제관리개선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소위 ‘7·1조치’는 하부단위의 정책결정 권한 강화(분권화)와 시장의 경쟁요소의 도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생산계획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율처분권을 인정하고 일부 제품의 가격과 규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기업과 공장을 판매실적으로 평가하며, 생산실적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과 보너스를 지급(평균주의 타파)⁶⁷
- 농업부문에서는 실적평가단위를 기존의 작업반에서 분조로 축소하고, 의무수매량(30%)을 제외한 초과생산량(70%)의 자율처분권 인정
- 지방공업 생산품의 가격 자율적 제정 허용⁶⁸
- 쌀을 비롯한 물품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국내의 수급여건 및 국제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각종 상품과 노동 및 서비스의 가격을 생산비 개념을 고려하여 현실화⁶⁹

이 중에서도 기존의 시장화 현상을 제도권 속으로 편입시키도록

67. 부여된 생산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실업상태의 세대주에게는 국가가 최저생계비(200~300원)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68. 국가는 가격 제정관련 원칙과 기준만을 정해주도록 하였다.

69. 다양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관리 관련 조치로 인한 북한의 물가 및 임금 인상수준 다음과 같다. ▲쌀 1kg: 8전→44원(550배) ▲옥수수 1kg: 6전→20원(330배) ▲돼지고기 1kg: 7원→170원(24배) ▲세숫비누 1개: 2원→20원(10배) ▲버스·지하철 요금: 10전→2원(20배) ▲평양-청진 철도요금: 16원→590원(37배) ▲전기료 1kW: 3.5전→2.1원(60배) ▲광산 등 중노동자 월급: 240~300원→6천원(20~25배) ▲일반 노동자 평균월급: 110원→2천원(18배)

작용한 조치는, 국가의 계획지표를 최소화하면서 기업들에게 ‘현물지표’ 대신에 ‘액상지표’를 달성하도록 기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살아갈 길을 마련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했기 때문에, 자금력과 시장에서의 경험을 가진 개인과의 제휴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들의 협력형태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⁷⁰ 공장·기업소가 생산을 담당하고 판매는 개인에게 맡기는 형태, 개인이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기업소가 판매를 맡는 형태, 개인이 생산과 판매를 주도하여 진행하고 공장·기업소에는 이윤의 일정비율이나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 자금을 가진 다수가 운영자금을 제공하여 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형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생산된 주요 제품들로는 시멘트, 철근과 같은 생산재와 가구류, 옷, 신발과 같은 생필품, 그리고 인조고기, 변성국수 등과 같은 음식가공품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없는 상업기관에서는 개인들에게 상점이나 백화점의 일부 매장을 임대해주거나 개인들이 물건을 조달해 주면 판매를 대행해 주고 이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7·1조치’ 이후 북한당국은 종합시장을 개설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상설화·합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이 조치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시장

⁷⁰- K씨(남, 44세, 2005년 탈북) 인터뷰.

I
II
III
IV
V

화 현상을 인정하고 이를 합법화시키고자한 것은 아니다.

북한당국은 '7·1조치'를 발표한 직후, 농민시장을 폐쇄하는 등 사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국영상점을 통해서 소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하여 국영상점의 공급량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국영상점으로 하여금 시중의 식료품과 공산품을 수매하여 일반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문제점은 국영상점의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능력이 준비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국영상점의 진열대가 비워져 감에 따라 일반주민들은 다시 장마당을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의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선택은 장마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장마당의 기능을 활용하여 국가경제부문의 부족함을 보충하되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2003년 3월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전환시킨다는 조치로 가시화되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한 것이다.

종합시장의 개설은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양성화함으로써 정부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효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몇 가지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었다. 먼저, 종합시장이 국영상점의 역할을 대신함에 따라 국가의 유통체계가 더 위축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물가상승 현상을 억제하고 국영 공장·기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⁷¹ 소득격차

⁷¹ 조선신보(2004년 10월 21일)의 북한 내각 상업성 장두길 상업국 부국장과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시장장려조치는 시장에 상품 원천을 최대한 많이 조성해 사회

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전문화가 진전된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전문화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⁷² 평안남도 평성은 외제 가전제품과 경공업품, 나진과 청진은 수산물, 혜산과 무산은 약초류와 금속류 등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⁷³ 종합시장의 개설과 함께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개인들이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북한경제 시장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 허용과 통제

(1) 통제 강화와 완화의 반복

북한당국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반응은, 일단 시장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현상의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경제상황에 따라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북한은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정부차원에서 생필품과 식량의 공급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활동을 완화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특권기관 내부의 경제적 기득권을 둘러

적으로 물건 값을 안정시키며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⁷² 『데일리 NK』 <www.dailynk.com/korean/keys/2002/27/09.php>.

⁷³ 이 밖에도 함흥시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상 금속류의 거래가 활발한데 금속류가 주로 국가의 공장·기업소에서 빼돌려진다는 점에서 암시장 형태로 거래된다고 한다.

I
II
III
IV
V

싼 득실관계, 시장화 현상의 확산 정도, 남북 및 대외관계 등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민시장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조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았던 1970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재 공급이 감소하게 되자 1982년에는 농민시장을 상설화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 식량의 공급 상황이 호전되자 활성화된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민시장의 개장 횟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게 된다. 농민시장을 매개로 하는 암시장이 확산되어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는 1992년 10월, 암시장의 확산을 통해서 비사회주의 현상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비사회주의 그루뵀’을 조직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⁷⁴ 그러나 1990년 초반 내내, 사회주의 경제권의 체제전환 등을 이유로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결국에는 농민시장을 상설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1993년 농민시장을 상설시장화한다고 발표하게 된다.

(2) 시장의 합법화: 종합시장의 설치

2003년 3월 종합시장을 개설하면서 북한 당국은 운영방침을 밝히는 내각지시 및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장에 참여할

⁷⁴ 이에 따라 1992년에는 농민시장이 10일장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수 있는 단위로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에 더하여 개별적인 개인을 명시함으로써 개인들의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기존의 공식적인 경제활동과 함께 시장에 흡수하고자 하였다.

(가) 시장의 조직 관련 지침

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업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조직과 관리운영에 대한 실무적 지도는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가 맡아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도시의 경우 시 인민위원회 내 상업과가 지도하는 시장관리소를 따로 두어 시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관리소는 채산제로 운영하며 시장의 유지보수와 개축에 필요한 재원은 시장관리소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관리소가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본보기 시장’으로 건설된 평양의 ‘통일거리시장’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국영기업소’ 형태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개축해서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의 예산을 사용하거나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기관(국영기업소), 단체(협동단체), 개인들의 자금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나) 시장의 운영 관련 지침

먼저 거래품목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은 상업성이 지정한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농토산품,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과 수입상품, 개인들이 만들었거나 여유

I
II
III
IV
V

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포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집짐승과 가구류를 비롯한 부피가 큰 상품은 시장건물 밖에 따로 장소를 정하여 팔 수 있으며, 음식물의 판매는 위생조건이 갖추어진 시장 안이나 시장 밖의 식당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가격 및 한도가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 상품의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시장에서 가격조절의 기초로 되고 있는 쌀, 먹는 기름, 사탕가루, 맛내기 등 중요시표의 상품들은 해당 시, 군 인민위원회가 책임지고 자체 실정에 맞게 한도가격을 정하도록 하였다.

사용료와 세금의 납부도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 상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국가기관, 단체와 주민들은 해당부서(시, 군 인민위원회의 상 업무부와 재정부서)에 등록하고 시장사용료와 국가납부금을 내도록 하였다. 시장관리기관이 매일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국가의 재정기관이 매달 징수하는 국가납부금은 매대 면적, 위치, 취급하는 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가납부금의 경우에는 시장에 매대를 두지 않았더라도 집에서 상품을 가공하여 시장에 넘기는 사람이나 각종 상품을 ‘되거리(중개)’하는 사람도 등록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어 징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의 범주를 가능한 확대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도매시장의 설치와 운영

내각결정에 따르면, 소매시장에 상품을 넘겨주는 도매시장의 설치·운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도매시장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내보내는 제품, 무역회사들의 수입상품, 개인들이 만들었거나 여유로 가지고 있던 물건, 개인 여행객들이 들여오는 수

입상품 같은 것을 직접 현금으로 넘겨받아 소매단위들에 넘겨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최근의 통제 및 제한 조치: 시장 영역의 축소

경제난 외증에서 북한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던 장마당이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공식화되고, 2003년에는 정부가 ‘시장장려조치’를 통해서 대규모 시장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상품시장이 상설화된 이후 북한에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전역에 걸쳐 공식·비공식부문에서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자 북한당국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검열과 규제 확대 등을 통해서 공식·비공식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10월 ‘식량전매제’(시장에서 식량거래 금지)를 도입한 이후⁷⁵, 2006년부터는 상설시장의 개장시간 및 판매 품목 등에 대한 제약을 확대하는 등 시장화 현상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주력한 것이다. 2006년 12월에는, 17세 이상 남성(배급 700g 이상의 대상자)들의 장마당 장사를 금지하였다.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는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시장 참여 연령대의 상향 조정, 판매 품목 및 가격 제한 등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는 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시장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비사회주의 행위를 그만두자』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를 하달하여, “지

⁷⁵- 200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국가배급제 복귀’를 선포하고 전격적으로 장마당 식량거래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국가가 약속한 식량배급이 실행되지 못하여 2달 만에 없던 것으로 유아무야되었다.

I
II
III
IV
V

금의 시장은 인민이 생활상에서 편의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국가 규율이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장소, 혹은 상인의 돈벌이 장소로 변하고, 참으로 시장이 비사회주의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장 장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앞당기는 근본 원천”이라고 역설하였다.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 노력은 2009년 1월부터 상설시장을 과거의 농민시장으로 환원시키겠다는 조치의 발표에서 정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식량에 이어 공산품과 수입품은 모두 국영상점에서만 취급하도록 거래품목을 크게 축소한데 더하여 상설시장을 ‘10일장(10일에 한번 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그 시행 시기는 일단 늦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지난 2009년 6월 중순경, 북한에서 가장 큰 도매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평성도매 시장이 폐쇄되었으며, 기존의 상인들은 두개의 구역으로 분산되어 축소된 상태에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북한당국의 시장 축소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⁶

그러나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15일에는 장마당에서 팔지 말아야 할 ‘통제물품 품목’을 공시하면서 강력한 시장단속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⁷

76.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9년 9월 15일.

77. 『NK지식인연대』, 2009년 3월 17일.

●표 IV-3 장마당의 주요 통제물품 목록

유 형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한국 상품, 합영회사(개성공단 및 합작회사 제품) 상품, 유엔물자와 약품(유엔 및 국제기구 보급품과 약품)들 ○군인들의 피복류나 군 생필품, 군수물자 등
유 통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회사들에서 수입된 일체의 물품 ○외국산 가정 전기용품(가전제품) ○수입산 완구류 ○국가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 ○출판물 및 수공예품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농토산물 ○개인이 만드는 대형 가구류 ○의약품 ○일체의 자동차 부품 ○개인이 만든 식료품과 포장하지 않은 식료품(식품) 등
개 별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산 가정용 전기용품: 텔레비전(TV), 녹화기(비디오), 녹음기, 반도체라디오, mp3, 외국산 CD(공CD), 전기 밥가마(전기밥솥), 전기담요, 냉동기(냉장고), 세탁기, 전기불판(후라이팬) 등 ○건재류: 철문, 쇠살창 ○완구류: 완구용 무기류 일체, 괴상한 소리를 내는 인형과 놀이감 ○출판 수공예품: 일체 국가 출판서적, 교과서, 각종 컴퓨터 인쇄물, 외국 서적, 증명서(신분증), 개인들이 만든 수예 및 공예작품 ○대형가구류: 소파, 이불장, 침대, 해면이불 및 깔개, 0.5평방 이상 대 판거울(대형 거울) ○의약품: 담배 끊는 약, 임신 중절약, ‘몸내는’ 약, 국가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모든 의약품, ○이외 모든 해산물, 지방 산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일체의 물품(된장, 간장도 속함), 협동농장들에서 생산된 농토산물, 보석화, 조선화, 안경, 보석, 목걸이 및 반지, 외국산 가방류, 외국산 담배, 외국산 ‘손시계’ 및 전자시계 등

* 출처: 『NK지식인연대』 북한관련 뉴스, 2009년 3월 17일.

<표 IV-3>에는 공지된 ‘통제물품 목록’에는 유통별, 종류별로 물품들이 정리되어있고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그나마 팔 수 있는 물건들도 가격을 정해 놓아 사실상 장사 금지령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장 1,800

I
II
III
IV
V

원, 조 1,700원, 팔 2,100원, 등 개인이 생산한 ‘알곡류’와 계란, 두부, 닭, 돼지고기, 콩기름 등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놓았다고 한다. 이 조치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9년 5월 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장에서 음식을 팔지 못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⁷⁸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음식물 판매로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이 상설시장을 떠나 상대적으로 단속이 적고 수요가 많은 시골을 누비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인식은 최근 각 시민반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연 내용에 잘 담겨져 있다.⁷⁹ 『시장을 당의 의도대로 관리 운영할 데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에 따르면,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통제·단속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차판 장사와 도매 장사
- 국가적으로 못 팔게 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시장 주변에서 장사하는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현상
- 기관, 기업소들에서 개인 장사꾼들이 장사하도록 조성시켜 주는 현상
- 기업소 자체로 장사판을 벌려 놓은 현상
- 젊은 여자들이 계속 장사하는 현상
- 평성시장이 전국 도매시장이 되고 있는 현상
- 시장 자체적으로 판매소를 만들어 장사하는 현상
- 손구루마 끄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

78.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80호.

79.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78호.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시장 물품에 대한 공급자 역할을 해온 무역회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사실도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2009년 5월 이후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화벌이 기관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⁰ 『무역회사들을 국가무역기관에 통합시키고 국가의 무역계획에 따라 유일적으로 무역을 진행할 데』 대한 국방위원회 지시문이 하달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외화벌이 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화’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으며, 군부 소속 및 보위부나 보안성과 같은 특수기관 소속 외화벌이 기관들은 앞으로 국방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무역계획을 하달 받아 수행하도록 되었다. 또한 각종 기관이나 공장·기업소 등과 같이 사회에서 운영하던 무역회사는 도 무역기관에 소속시켜 도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역기관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력 강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외화원천에 대한 국가, 특히 핵심계층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북한의 무역회사가 그동안 불법적인 형태로 기관 차원의 이익을 추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사회의 일탈현상을 부추겨왔다는 점에서 이 기관들에 대한 통제 및 단속 강화는 북한사회의 일탈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북한의 시장화 단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현재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어떤 수준이나 단계에 있는가에 대한

⁸⁰ 『NK지식인연대』, 2009년 6월 1일.

I
II
III
IV
V

판단과 평가는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02년과 2003년에 국가경제관리체계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한 조치들을 개혁조치로 보느냐 단순한 행정적 개선조치로 보느냐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⁸¹

그러나 앞장에서 소개된 로스의 발전단계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북한경제는 현재 개혁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 및 당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북한당국이 국가경제 내부의 분권화 조치를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식경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차경제 영역에서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문제는 최근에 와서 북한당국이 시장활동을 제한하고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화 현상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경제의 현 단계는 개혁의 실험단계(또는 실험적 개혁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잠시의 조정기를 거쳐 본격적인 개혁단계로 진입하는 경우와 독점화 상태로 후퇴하는 경우, 그리고 현재의 개혁수준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쇠퇴기로 진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물론 그 중간쯤에서 오락가락할 가능성도 있다.

첫째,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단계를 거쳐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경우로, 북한이 전격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공식부문의 시장활동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사적경제활동의 합법적인 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가시화될 가

⁸¹ 단순한 행정조치로 인식할 경우에는 북한경제가 아직 독점화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개혁이 후퇴하여 ‘독점화시기’로 복귀하는 경우로, 지금과 같은 시장에 대한 통제정책이 더욱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개혁수준에서 더 이상 진전된 개혁정책을 선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한 개혁조치의 후유증으로 인한 쇠퇴기로 진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북한당국은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북한경제의 미래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인 당국이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고, 또 강화하는 조치를 반복하는 일관성과 방향성을 상실한 불규칙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로부터의 개혁 압력이 점차 강화되고 이것이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일반주민들의 사적인 경제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이 포함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초부터 종합시장을 농민시장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북한당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당분간 경제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거나 시장을 통한 경제적 일탈현상이 지나쳐서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I
II
III
IV
V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 활동을 묵인하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⁸²

3. 부문별 시장의 형성 실태 및 주요 특징

가. 소비재 상품시장

(1) 시장의 형성 실태와 주요 특징

북한에서 상품은 “자기가 직접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서 만든 물건. 다시 말해서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한 물건”을 의미한다.⁸³

1980년대 말, 사회주의 시장경제권이 붕괴되면서 북한경제는 장기적인 침체기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극심한 식량난은 북한주민들을 기아선상으로 내몰았으며, 기아를 피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이 선택한 것은 개인적인 경제활동, 즉 시장활동이었다. 초기에는 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물건을 장마당에 내다파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식량을 얻기 위해 시골농촌을 향하던 사람들은 지역마다 물건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등짐을 지어 나르면서 장사를 하였다. 점차 집안에 팔수 있는 물건이 바닥을 보이자, 이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수공업으로 생산하여 시장에 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장사꾼과 수공업자 그룹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되

⁸² 북한의 주요 기관들이 시장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조치의 범위와 강도가 권력집단간의 이권이나 세력 다툼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⁸³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1985, pp. 35~36.

었으며, 이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었다.

시장을 통해 생계문제를 해결한 주민들은 점차 시장경제에 눈을 뜨면서 이윤 획득과 부의 축적방법을 학습해 나갔는데, 2002년과 2003년 당국의 시장요소의 도입과 종합시장 개설 조치는 시장이 더욱 활발하게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기본적인 생필품에서 시작하여 점차 품목이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고소득층이 형성되면서 고급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종합시장에서 유통되는 소비재 상품 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생산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사탕과 의류가 있는데 사탕은 전체의 50%, 의류는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의 발달은 거래하는 품목의 수량과 다양성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도 진화시켰다. 초기에는 원시적인 기술과 재료 및 도구를 활용한 가내수공업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점차 공장, 기업소의 설비와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하거나 현대화된 기계·설비를 구비한 개인 공장을 차려 놓고 노동자도 별도로 고용하여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제수공업의 사례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2) 주요 사례분석

(가) 의류 장사

북한에서의 의류시장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수입된 의류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가내수공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에서 대표적인 의류도

I

II

III

IV

V

매시장이인 청진의 수남시장의 경우, 옷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업자가 2004년 기준, 200~300명 수준이라고 한다.

의류 봉제업의 생산 및 유통은 원부자재의 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등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단계마다 활동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고 한 업자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생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전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청진의 수남시장에서 도매로 판매되는 옷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한 경험이 있는 S씨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⁸⁴

옷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은, 어떤 옷을 만들 것인가 구상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옷을 만들어야 좋은 가격에 빨리 팔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S씨의 경우는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의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거나 국가수매상점에 진열된 의류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구입해서 재단을 위한 본(패턴)을 만들었다고 한다.

다음은 원자재를 조달하는 단계로, 수남시장의 매대에서 옷감과 부자재(단추, 실, 자크 등)를 구입하는데 주로 중국 수입산을 사용한다.

원부자재의 구입이 끝나면 제품의 생산단계로 들어가는데, 생산단계는 재단, 미싱, 다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옷감을 재단하는데, S씨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재단을 했다고 한다.⁸⁵ 하루에 옷감 한필(100벌 분량) 정도를 거의 날이 새도록 작업해서 마쳤다. 재단이 끝난 옷감은 개인적으로 고용된 미싱사(3명을 고용했다고 함)에게 필요한 부자재와 함께 일을 맡긴다. 미싱사는 집에서 자신의 미싱을 가지고

⁸⁴ S씨(여, 청진에서 장사, 2004년 탈북) 인터뷰(2009.9.10).

⁸⁵ 다른 업자의 경우에는 재단사를 따로 고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작업을 하는데 한 벌 당 6~7원 정도의 가공 임금을 받고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가공을 마친 옷은 다리미공(2명을 고용)에게 맡겨서 다리는데 북한에서는 전력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기다리미 대신에 숯불을 넣은 다리미를 사용했으며, 다림질에는 한 벌 당 2~3원이 지급되었다.

마지막으로 판매 및 유통단계인데, S씨는 본인이 수남시장에 매대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은 오후에는 주로 원자재 구입 등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매대를 맡겼는데, 여기에 고용된 사람은 기본가격(S씨가 제공한 가격)에 일정 금액의 이윤을 더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자신의 수입을 만들었다. 의류 생산업자 중에는 수매상점에 위탁판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판매금액에 빨리 회수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의 선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진의 수남시장은 도·소매시장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아침시간(7:30~10:00)에는 주로 지방의 소매상인들에게 도매로 판매한다고 알려져 있다.

S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옷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수남시장을 운영하는 기업소와 국가재정기관에 시장사용료와 국가납부금을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획경제부문의 연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옷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개인업자는 자신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최소한 6명(가구)의 소득을 보장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한 일반주민들의 생계문제를 개인업자들이 시장활동을 통해서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이다.

I
II
III
IV
V

(나) 수산물 장사

북한에서 수산물은 광산물과 함께 주요 수출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이 훌륭한 외화벌이사업으로 부상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모든 기관·기업소·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대외무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어촌마을에는 다양한 단위들이 진출하여 수산물수출사업소(외화벌이 기지)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어부를 공식·비공식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산물을 획득하기도 하였지만 수산협동조합에 소속된 마을의 어부들이 수확한 수산물을 높은 가격을 쳐서 구입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개인 사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계획 부문이 시장에 어떻게 관여 및 활용하고 있으며 비계획부문과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⁸⁶

수산업 부문의 개인 사업은 대체로 조그마한 어선을 한척 마련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어선은 수출사업소의 단위에서는 중국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중국어선을 임대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은 수산협동조합이나 수산물수출사업소에 소속된 배 중에서 기름이 없어서 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배를 임대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자금으로 배를 구입하여 국가의 사업소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조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배의 임대는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명의를 빌리는 경우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돈주’라고 불리는 부자들이 직접 투자해서 특정 기업소 명칭의 외

⁸⁶ K씨(남, 50대, 해주출신, 2008년 탈북) 인터뷰(2009.2.11) 내용 및 주성하, “어업, 북한 자본주의 전초지대로 뜨다.” 『신동아』 599호(2009년 8월 1일), pp. 212~225 참조를 하였다.

화별이기지를 세우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한다. 이 경우 외화별이사업소의 지배인이나 외화별이 기지의 지장장은 자신의 자금으로 어선을 확보하고 선장과 어부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외화별이 사업을 한다.

어선을 확보한 개인 선주는 연료와 각종 어구 및 식량 등을 마련해서 고기잡이에 나가게 된다. 이 때 임금노동자인 ‘삿발이’를 개인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되면, 먼저 해당기업소에서 부여받은 계획물량분에 대해서는 기업소에 넘기게 되는데, 이때 가격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넘기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목표량을 초과한 물량은 가격을 높게 쳐주는 다른 기관이나 장사꾼에게 팔게 된다. 어획물을 구입한 기업소는 이를 중국의 수입상에게 넘기게 된다.

북한의 동해안에서는 오징어잡이철과 명태잡이철이 가장 바쁘다고 하는데 7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계속되는 오징어철에는 어촌의 집집마다 잡은 생오징어를 말리느라 온 동네가 오징어 냄새로 진동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린 오징어는 장사꾼들에게 넘겨져서 도시의 시장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중국 등지로 수출된다.

해주에서 선주 생활을 한 탈북자의 경우 ‘삿발이’를 5명 정도 고용하였으며, 한 달에 3~4회 출항하였고, 한번 출항하면 2~3일을 바다에서 지냈다고 한다. ‘삿발이’들에게는 어획량을 판매한 수익금에서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윤)에서 10%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데 월 평균 15,000~30,000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선주의 총수입은 한 달에 평균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는 기업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50%(15만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부대 경비(해안경비초소 뇌물, 배수리비, 어구 구입비 등)를 제하고 나면 한 달 순 수입

I
II
III
IV
V

은 10만원이 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그릇 장사

북한의 시장에는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고무대야(‘그릇’)가 판매되고 있는데 80% 이상이 중국산으로 모양도 예쁘고 색깔이 고와서 가격이 비싸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그릇을 파는 매대의 80% 이상이 중국제 그릇을 취급한다고 한다. 대신 북한 내에서 만들어진 그릇은 투박하고 곱지 않아서 북한주민들이 중국산에 비해 선호하지는 않지만 싼 가격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북한산 ‘그릇’ 장사를 경험한 탈북자의 사례를 통해서 생필품 제조과정에서 시장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계획부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⁸⁷

Y씨가 북한산 ‘그릇장사’를 선택하게 된 것은 중국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함남 금야군에서 살고 있는 그녀는 시장에서 판매할 그릇을 함흥시에서 구입하여 ‘씨비차’를 이용하여 금야군 시장으로 가져와 판매하였다고 한다. 함흥시에는 고무 대야를 부업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5개 정도 있는데, 각 공장마다 생산하는 종류가 조금씩 달랐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일용품공장에서는 바게스와 바가지, 50ℓ 통을 생산했으며, ○○○용품공장에서는 세수대야와 30ℓ 통을, ○○○공장에서 물바가지와 바게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공장들에서 그릇을 생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주문생산이었다고 한다. 품목별로 수량을

⁸⁷ Y씨(여, 40대, 함남출신, 2008년 12월 탈북) 인터뷰(2009.9.17).

주문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받아가는 형식이다. 이때 물건을 주문하는 상인이 원료(플라스틱 깨진 것이나 폐비닐 등)를 구해다 주문 원료에 해당되는 가격을 제하고도 약간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함흥에게 구입해온 그릇은 금야군 시장에서 판매했는데 시장의 매대는 친정 엄마가 맡아서 물건을 판매했다고 한다. 물건 조달과 판매를 나누어서 한 것이다.

(라) 중고제품 장사

북한주민들은 최근에 와서 새 제품보다는 중고품이라도 외국제품을 선호한다고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국산 제품인데 중국산은 사용하더라도 단속의 대상이 아니어서 특히 선호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이 내구력이 약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몰래 한국산 중고제품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회령에서 중고제품을 거래한 L씨의 경험을 살펴보자.⁸⁸

중고 물품의 거래는 물건 확보가 중요하다. L씨의 경우 연줄을 동원해서 중국에서 중고 물품을 가지고 오는 장사꾼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이후, 집으로 직접 찾아가 거래를 한다고 한다. 때로는 시장에서 도매가격으로 구입하기도 한다. 구입한 물품은 적당한 수리와 세척, 재가공 과정을 거쳐서 판매한다. 의류의 경우에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재가공작업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선호도에 맞추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본인이 집에서 직접 하기도 했지만 물량이 많을 때는 재봉사

⁸⁸ L씨(여, 30대, 회령시 출신, 2008년 탈북) 인터뷰(2009.9.24).

를 2명 따로 고용해서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고급 의류를 세탁하는 작업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 시행착오를 거쳐 터득한 기술로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세탁은 본인이 하였다고 한다.

한국제가 포함된 중고제품의 판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를 주로 하였고 종종 소문을 듣고 집으로 찾아와 구매하는 고객도 있었다고 한다.

(마) 기타: 신발 및 의약품(항생제) 장사

순천시에서 수공업으로 신발을 생산하는 사례를 살펴보자.⁸⁹ 신발은 중간재의 생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개인 수공업자들이 신발생산에 필요한 천 가피와 고무 바닥창을 제작하여 공급한다. 신발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개인 신발생산업자는 이들 중간재를 구입하여 구멍탄아공이를 활용하여 조립·가공한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신발은 물건을 발주한 도매업자에게 넘겨지고, 이 물건은 소매업자를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화학공업이 발달해온 순천시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사례를 살펴보자.⁹⁰ 먼저 원료를 생산해야 한다. 항생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배양액은 제약공장의 배양탱크 안에서 생산된다. 또한 항생제를 생산하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알콜은 개인적인 가내 수공업을 통해서 공급된다. 다음으로 제품 생산인데, 개인 제약업자가 집안에 설치한 '회전교반조'에서 섞여서 화학반응을 거친 뒤 농축분말 결정체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분업의 형태에서는 배양액을 생산하는 국

⁸⁹ 손혜민, “박기원 그 순천사람,” 『임진강』 5호 (2009.9), p. 56.

⁹⁰ 위의 글.

영기업은 개인 제약업자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3) 국가의 공식경제부문과 비공식경제부문의 관계

(가) 기생적 공생관계

우리 사회에서 북한경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국가부문이 시장의 부를 착취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국가부문과 비국가부분(특히 시장부문)과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앞의 다양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앞의 2장에서 펠브르그가 구분한 경쟁관계인가 공생관계인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양 부문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공생 관계가 포함된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공식경제부문이 거의 정지되다시피한 공식경제의 생산 및 공급기능을 보완해주거나 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때, 이들 간의 관계는 경쟁적이라기보다는 공생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생적 관계는 협력적 공생관계와 기생적 공생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국가부문의 시장활동이 상품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협력적 공생관계보다는 기생적 공생관계가 더 일반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
II
III
IV
V

(나) 복합적·가변적인 관계

또한 양 부문의 관계는 정부의 시장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기적 상황에 따라 관계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표 IV-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장의 기능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표 IV-4 국가부문과 비공식부문간의 관계

영역 시기	상품의 공급 (대외무역)	상품의 생산	상품의 판매
농민시장 (~1992년)	대외무역 미미 /독립적 관계	덧발 활용한 농산물 /제한적 보완·대체	일부 농토산물, 생필품 /실용적 보완
장마당 (1993~2002년)	밀무역증대, 국가무역기관의 다양화 /기능, 영역의 보완	가내수공업을 통한 생필품 /제한적 보완	국가판매망 기능 상실 /폭 넓은 보완 (실질적·기능적 대체)
종합시장 (2003~2008년)	개인 자본의 참여 증가 /대체와 보완	국가기업이 개인자금과 연계 /협력과 경쟁	국가생산물의 시장판매 허용 /보완과 결합
시장에 대한 통제 (2009년~)	제한적 협력	비공식부문의 비합법적 활동 증가 /협력관계 약화	국가상점의 경쟁력 제고 /비합법적 영역에서의 경쟁 심화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공식적인 국가경제관리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주민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점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국가가 시장기능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시장을 개설한 조치 등을 통해서 가시화된다. 국가차원의 이러한 조치는 국가부문과 비국가부

문간의 관계가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의 목인이나 부분적인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활동에서 여전히 비합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 현실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에 기생하는 행태는 정부의 통제력 약화와 새로운 자본가 그룹의 부상 및 세력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지도부의 의도가 맞물려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생적 공생관계가 구조화된 것이다.

국가부문과 비국가부문간의 관계는 최근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국가부문 내에서의 비합법적 시장화 현상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양자간의 협력적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보다 더 강화될 경우, 암시장을 통한 비합법적인 시장경제활동의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국가부문과 비국가부문간의 관계가 시장활동을 중심으로 어떻게 형성, 변화해 가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과 정치적 의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국가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가의 시장정책에 따라서 공생관계가 활성화되거나 제약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I
II
III
IV
V

나. 노동시장

(1) 시장의 형성 실태와 주요 특징

북한에서 노동력 시장은 “로동력이 상품으로 취급되어 거래가 진행되는 경제적 영역. 로동력상품의 수요와 공급, 임금수준과 고용조건 등의 관계를 표현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시장범주”라고 정의하고 있다.⁹¹ 또한 노동시장은 ‘로동력의 상품화과정의 역사적산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한 조건들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노동력 시장이 실제로는 북한 내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 국가에는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지는 ‘완전고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국가의 배급체계가 붕괴되고 직장에서 월급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되자, 직장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대신에 종업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장사 등 사적 경제활동을 하는 소위, ‘8·3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사할 밑천도 없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노동력을 파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비공식 인력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흥장마당의 경우, 12살에서 30세 사이의 사람들(삿벌이꾼)이 대략 20명 정도가 항상 있다는 것이다.

⁹¹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pp. 495~496.

이들은 12~16세가 대부분을 차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여자가 70% 된다고 하는데, 장마당 앞에 서있으면서 짐을 운반해 주고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⁹²

(2) 주요 사례분석

(가) 봉제업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의류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거나 옷감을 수입하여 봉제가공을 하여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이때, 시장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사람이 옷감을 구입하여 재단을 마친 후 ‘미싱사’에게 일감을 나누어 준다. 이때 의류상인이 직접 재단을 하기도 하고 ‘재단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이후 옷이 완성되면 상인은 이를 회수하여 ‘다리미공’에게 맡겨 다리미질을 함으로써 상품으로 공정을 끝마친다고 한다.

이를 보면, 북한에서 옷을 생산하는 상인은 미싱사, 재단사, 다리미공을 고용하거나 하청을 주는 형태로 개인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적인 봉제업 부문에서 미싱사, 재단사, 다리미공 등이 일종의 전문인력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어망짜기

고기잡이의 필수품인 어망을 짜서 어선에 판매하는 사업이 북한 어촌에 성행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돈주’)

⁹² 북한민주화네트웍, 『NK Vision』 2009년 9·10월호, pp. 4~5.

이 어망의 가공주로 자신의 집에 일할 사람을 모아 놓고 간단한 도구와 중국제 나일론실과 같은 재료를 제공하여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 때 가공주는 어업협동조합이나 수산사업소, 군, 사회안전부 등의 외화별이 사업소가 소유한 어선에 어망을 도매로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공주의 집에는 보통 주부나 여학생 15명 정도가 수작업으로 어망을 짜는데 2006년 여름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1,200원에서 1,300원 정도를 번다고 한다.⁹³

(다) 건설현장

신의주와 평성 등 지방에서는 돈주들이 권력층과 결탁하여 자금을 대고 아파트를 지어 일반 부유층에 분양하는 부동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건설현장에 투입할 노동자들을 국가기관인 건설사업소와의 계약을 통해서 해결하지만, 이들의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4년부터는 개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비공식적인 인력시장을 통해서 건설노동자들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라) 소토지 농사(소작농?)

함경북도 새별군 룡남리에 거주하는 K씨는 ‘대지주’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산림의 넓은 면적을 개인 소토지로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다. 은퇴한 K씨는 삼림감독원 밑에서 순시원으로 일을 하면서 개인농사

⁹³ 이 정도의 수입은 당시 쌀 1.5kg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이시마루지로, “시장의 힘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을 추적하라,” 『NK Vision』 2008년 7·8월호, p. 23.

를 짓고 있는데, 처음에는 1,000평 정도의 밭에 옥수수를 경작하다가 2008년부터는 5정보로 면적을 늘렸으며, 하루에 일당으로 옥수수 5Kg을 주며 사람들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⁹⁴

2009년부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소토지 농사가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데, 일종의 소작농 형태를 띤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하루 일당으로 두 끼 식사와 통옥수수 3kg을 주며, 밭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100평당 2,000원씩 지급하기도 한다.⁹⁵

(마) 고기잡이(삿밭이)

북한의 동해안 어촌지역은 해마다 고기잡이철이면 외지에서 삿밭이꾼들이 몰려든다. 특히 오징어잡이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한 철 오징어잡이를 잘하면 일 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어 외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람(농장원이나 공장에서 일하는)들도 오징어잡이 어선을 얻어 타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뇌물을 쓰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된다. 오징어잡이의 경우, 삿밭이꾼은 자신의 낚시를 준비해서 승선을 하여 오징어를 잡는데 자신이 잡은 양의 일정 비율을 선주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를 팔아서 자신의 수입으로 챙기는 방식이다. 이 비율은 선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대 5:5에서 최소 8:2이라고 한다. 7:3의 경우 10마리 잡으면 선주에게 7마리를 바치고 자신이 3마리를 가져가는 것이다.

⁹⁴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81호, pp. 8~9.

⁹⁵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78호, p. 3.

I
II
III
IV
V

서해안 조개잡이의 경우에는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을 하는 선주가 조개를 깎 인부를 한 척에 작게는 50명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를 모집하여 바지선(浮船)에 태우고 견인선(끌배)으로 끌고 나가 조개를 캔다고 한다. 노동자에게는 귀항하여 조개를 팔고 받은 식량이나 돈을 분배해주었다고 한다.⁹⁶

(바) 가내 수공업

함경북도 청진시 수복동에 과자를 만드는 집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집에서는 직업 없이 노는 여자들이나 집이 너무 가난하여 끼니를 챙겨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준다고 한다. 대체로 15~22살의 아이들인데,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여 하루 종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저녁 10시까지 일을 시킨다. 이렇게 일을 하고 버는 돈은 하루 890~1,000원 정도이다.⁹⁷

(3) 국가의 공식경제부문과 비공식경제부문의 관계

북한에서 인력의 배치와 이동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1990년대 식량난을 거치면서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자 그 원칙이 깨졌다. 이에 따라 당면한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생적인 노동력시장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⁹⁶ 한반도통일연구소, “북한에도 ‘개인사업가’ 등장,” (2002.1.19), <<http://hankorea21.com/board/zboard.php?id=pds&no=119>>.

⁹⁷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86호, p. 10.

(가) 국가부문은 노동력 공급, 비공식부문은 수요를 제공

북한에서 노동력 시장은 불법적인 암시장이지만, 기본적으로 공식 부문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면서 때로는 다른 공식부문에서 제공하는 유휴 노동력을 비합법적으로 고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의 유휴노동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 암시장이 형성, 유지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 노동력 시장의 전문화·분업화

시장화 현상의 확대와 함께 노동력 시장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노동력 시장이 점차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노동력 시장 초기단계에는 개인의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수준의 작업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수공업부문에서도 공장제기계화작업 등의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 점과, 공장·기업소들이 개인자본가와 계약을 통해서 노동력을 조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생산규모가 증가하면서 생산작업을 분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신발을 생산하는 경우, 폐고무나 낡은 천 등 원자재를 수거하는 작업, 바닥창을 만드는 작업, 외피를 만드는 작업, 이를 조립하는 작업 등으로 분업화가 된 것이다.

I
II
III
IV
V

다. 생산재시장

(1) 시장의 형성 실태와 주요 특징

북한에서는 생산재를 생산수단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다. 생산수단은 “물질적 부의 생산에 쓰이는 로동수단과 로동대상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생산적소비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이 직접 먹고 입고 쓰는데 리용”되는 소비재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⁹⁸ 따라서 북한에서는 석탄, 시멘트, 옷감 같이 동일한 물건도 주민들의 생활에 사용될 때는 소비재가 되고 생산에 사용될 때에는 생산수단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자재는 “공업적가공을 받은 것으로서 계속 로동대상으로 리용되는 생산물, 가공원료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⁹⁹ 그러나 북한에서는 실무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될 때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재공급, 자재상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원료, 연료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설비까지 포함한 생산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관리의 부문에서는 ‘원료’라는 보다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북한에서 자재는 용도에 따라 ‘기본자재’와 ‘보조자재’로 구분되고 있다. ‘기본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성격에 따라 다시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베어링이나 부분 조립품과 같이 가공되지 않고 바로 사용되는 자재, 둘째, 가구용 목재와 같이 기술적으로 가공은 되지만 원래의 성질이 유지되는 자재, 셋째, “비날론 생산을 위한 카바이트와 같이 생산과정에서 성질이 변화되어 새로운 물질구성에 참가하는 자

⁹⁸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85), pp. 166~167.

⁹⁹ 위의 책, p. 251.

재”가 그것이다. ‘보조자재’ 역시 용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물감과 같이 기본자재에 첨가됨으로써 생산되는 제품에 필요한 특성과 걸모양에 영향을 주는 자재, 둘째, 윤활유와 같이 생산도구의 움직임을 쉽게 하여주는 자재, 셋째, 작업현장의 조명 및 난방용 자재와 같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데 쓰이는 자재 등이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자재공급체계를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새로운 자재공급체계는 “모든 자재를 우가 책임지고 현물로 생산현장에까지 날라다주는 원칙에서 조직된 국가의 통일적인 자재보장체계”라고 강조하면서, “자재를 생산자 기업소로부터 소비자기업소에까지 내려다주는 자재상사공급체계와 공장, 기업소 창고에서 생산현장 기대앞까지 내려다주는 기업소자재공급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⁰⁰

2001년, 북한은 경제난 와중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기존의 자재공급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물자교류시장’을 설치하였다. 2001년 10월 3일자로 발표된,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문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를 개선할데 대하여』에 따르면, “자재공급사업도 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물자교류시장을 조직·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은 ‘물자교류시장’을 설치한 배경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세계 사회주의시장이 무너지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와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국가가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 주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였으며, 둘째, 생산과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물자와 국가가 기업소의 상대적 독자성과 창발성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물의 일부를

¹⁰⁰. 위의 책, p. 252.

I
II
III
IV
V

자체로 처리하도록 허용한 물자들을 관련 공장, 기업소들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이를 통해서 국가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기업소로 하여금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걸린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국가계획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¹⁰¹

여기에 더하여 2005년 6월부터는 ‘수입물자교류시장’을 설치하였다. 북한의 무역성 산하 ‘조선중앙수입물자교류총회사’가 중국의 ‘요녕태성국제무역유한공사’ 등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설치한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⁰² 이 시장은 북한 각지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탄광, 광산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를 외국에서 수입,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건축자재, 강재, 도색재, 농기계, 수지제품, 고무제품, 기계부속품, 비료 등 수천 종의 수입원자재와 기계부속품, 공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조선중앙수입물자교류총회사’는 수입처의 다변화를 위해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도 인민위원회 소재지, 남포항, 송림항, 원산항, 청진항 등 주요 항만 및 국경에 지사와 창고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³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기업소와 공장들은 원하는 자재를 제때에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재가 시장

¹⁰¹ 리장희,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류통영역에 대한 주체적 견해,” 『경제연구』 114호 (2002년 1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pp. 22~24.

¹⁰² 『조선중앙통신』(2005.12.13)에 따르면, 이 시장은 총부지가 28만여m²에 달하며 400여m²급 창고 10여개와 4천m²급 야외 창고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¹⁰³ 『조선중앙통신』, 2005년 12월 13일.

을 통해서 거래되는 현상이 다양한 품목에서 일반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주요 사례분석

(가) 무연탄 생산 및 거래시장

무연탄을 해외에 수출하는 외화벌이사업이 기업소들 간에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들 수출기관들이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개인사업자가 직접 탄광에 가서 탄을 구매하고 이를 운반하여 항구의 수출기관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무연탄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순천에서 무연탄을 사서 남포항까지 운반하여 수출기관에 판매하는 개인사업의 사례를 살펴보자.¹⁰⁴

먼저 무연탄을 구매해야 한다. 순천시외의 경우, 무연탄을 생산하는 순천탄광 연합기업소와 같은 대규모 국가 탄광도 있지만, 이 기업들의 신용도가 매우 낮아서 개인사업자들은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자체탄광’을 찾아 책임자인 ‘기지장’과 구매계약을 맺는다.¹⁰⁵ 이 자체탄광은 별도로 인력을 고용하여 무연탄을 캐는데, 무연탄을 캐서 바로 시장에 팔아 번 수익금으로 종업원들에게 쌀과 급여를 잘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자체탄광’은 국가가 폐광처리한 갱도에서 무연탄을 캐서 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탄광으로, 1996년부터 이 같은 개인 탄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자

¹⁰⁴ 손혜민, “박기원 그 순천사람,” 『임진강』 5호 (2009.9), pp. 65~67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¹⁰⁵ 2003년 기준으로 순천시에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탄광을 확보하여 탄을 생산하는 ‘자체탄광’이 거의 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탄광을 억제하는 국가 차원의 조치가 2005년에 취해지기도 했지만,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석탄과 주민용 땀갈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탄광개발 및 운영규정’을 발표(2006.12)하였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개인이 지방단위 및 사업단위의 명의를 빌려서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 졌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확보한 무연탄을 수요자가 있는 지역까지 운반해야 한다. 무연탄이 생산되는 순천에서 수출기지가 있는 남포항까지의 거리는 100여 Km 거리인데, 무연탄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은 개인적인 임차계약을 통해서 확보한다.¹⁰⁶ 트럭을 임차계약 후에는 트럭운전수를 사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모집한다.¹⁰⁷ 트럭의 운행을 위한 휘발유 구입과, 인원 통행증이나 차량통행증 등 법적인 수속 등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연탄의 판매이다. 순천에서 무연탄을 적재한 트럭은 남포에 도착한 뒤, 적절한 수요자를 찾아서 판매하게 되는데, 남포항에는 크고 작은 대중국 수출기지가 있어 쉽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나) 목재 생산 및 거래시장

북한에서 목재에 대한 수요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¹⁰⁶ 임대된 트럭은 원래 중앙의 특권기관에 소속된 회사 사장이 중국과 석탄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석탄을 운송하기 위해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십대의 트럭 중의 일부이다. 이 특권기업의 사장은 자신의 사업을 하청받아 수행할 개인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¹⁰⁷ 국가의 공식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수가 해당 기관과의 암묵적인 합의 하에 기관의 트럭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체계가 붕괴되면서 목재가 생산되는 곳과 수요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즉, 생산지에서는 목재가 생산되고 있는데 정작 이 목재를 수요로 하는 곳으로 운반해 주는, 공급과 수요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목재를 운반할 교통수단, 특히 화물열차(뽕통)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뽕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화물열차를 활용해서 목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경험한 L씨의 사례를 살펴보자.¹⁰⁸

군수동원총국 산하 ○○관리소의 차량지도원은 국가로부터 화물열차를 배정받고 이를 활용할 사업자를 물색하던 차에 L씨를 소개받게 되었다. ○○관리소는 화물열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사용료’를 요구하였는데 처음에는 6개월에 140만원을 납부했으나 사업이 잘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 300만원으로 인상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3년째부터는 재조정하여 6개월마다 2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L씨의 비용 지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뽕통’ 배정 담당자인 차량지도원에게도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해야하는 것이다.

L씨는 열차화물로 목재 판매사업을 추진했다. 목재는 양강도 운흥군에 위치한 ‘○○임산사업소’에서 구입하였다. 질 좋은 목재생산으로 유명한 ‘○○임산사업소’에는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열차를 배정받지 못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씨처럼 열차를 배정받았다고 문제가 다 해

¹⁰⁸- L씨(여, 30대, 회령시 출신, 2008년 탈북) 인터뷰(2009.9.24).

I
II
III
IV
V

결되는 것은 아니다. 작업장에서 목재를 베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벌목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작업을 독려해야 한다. 여기에 벌목장에서 열차역까지 트럭(삐삐)으로 운반하는 것도 트럭 임대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화물칸에 목재를 적재하는 것도 별도의 작업이다. L씨는 열차역에 도착하면 목재를 적재할 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6명 정도가 한 팀으로 작업을 한다. 화물열차에 목재를 적재하고 나면 역 화물담당자로부터 호송증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

목재를 판매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다. L씨는 판매처를 물색하기 위해 주변의 연줄을 최대한 동원했다. 그래서 찾은 거래처 중의 하나가 평남 온천군의 염전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마침 목재 수요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4개의 열차칸에 실고 간 목재는 현지에서 현금과 교환되기도 했지만, 소금과 교환을 하기도 하였다. 소금은 내륙지역에 가져가면 5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보한 소금의 양이 2개 빵통 정도뿐이어서 남은 2개를 활용하기 위해 계산시까지 소금을 운반하고자 하는 소금 장사꾼들을 물색하였다고 한다.¹⁰⁹

가지고 온 소금은 상업관리소에서 판매 승인을 받아서 적당한 창고에 보관해 놓고 판매처를 물색하였다. 소금의 일부는 상업관리소에서 구입하기도 하였고, 급양관리소(식당), 기초식품공장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주로 구입하였다. 이와 함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개인(장사꾼을 포함)들도 대량으로 구매해 가기도 하였다. 소금의 판매 가격은 국가기관에는 다소 싸게 판매하였고 개인에게는 조금 비싸게 팔았다.

¹⁰⁹- 소금 장사꾼에게는 10톤당 25만원씩 운반비를 받아서 그 수입도 째졌다고 한다.

또한 대량 구매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 소금은 거의 3개월 동안에 걸쳐 판매되었으며, 나중에는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였다.

(3) 국가의 공식경제부문과 비공식경제부문의 관계

(가) 국가경제부문이 생산재시장의 공급원

폐자재 수거와 같이 생산 자재를 시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가부문에서 생산된 생산자재가 공식적·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개인 및 기관·기업소들의 시장활동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탄광을 운영하는 ‘자체탄광’처럼 국가부문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나 설비,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여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목재의 거래처럼 개인이 기관의 명의를 빌려서 국가기관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포장하여 중간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생산재는 시장을 통해서 개인들이 바로 소비하기도 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국가부문으로 다시 유입되어 생산활동에 사용된다고 한다.

(나) 생산재 사적시장이 국가의 자재 분배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

북한에서의 생산재시장은 거의 작동을 멈춘 국가의 자재 분배 시스템의 기능을 상당한 수준에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

II

III

IV

V

이런 점에서 사적인 생산재 시장의 작동은 국가의 계획경제부문 생산 정상화 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의 계획부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계획부문에서 사용되어야 할 생산재가 시장을 통해서 비공식부문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에서 생산재시장의 존재는 국가의 계획경제부문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하여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분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라. 부동산(주택)시장

(1) 시장의 형성 실태와 주요 특징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소유제 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건설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생각하는 적정 수요에 비해 실제 수요가 더 클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주민들 사이에서 주거 환경과 규모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초과수요의 크기는 국가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주택 공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더욱 커질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기간 중 대부분의 주택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기 때문에 휴전 직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60년대 들어서는 농촌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자재부족, 생산시설의 낙후와 자금부족 등으로 북한

당국의 주택공급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주택공급 실적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정체와 뒤이은 경제침체기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주택난은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도 나타난 전후의 베이비붐 현상은 주택난이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 내에서는 두 세대가 한집에 같이 거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방 한 칸을 커튼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¹¹⁰ 이처럼 주택부족 현상이 만성화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장소나 규모의 주택을 국가로부터 배정받는다든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의 암거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주택의 암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하나씩 장마당에 내다 팔아 식량 등 생필품을 구입하던 주민들이 마지막에는 주택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다 넓고 편리한 장소의 집을 구입하고자 함으로써 비공식 주택거래가 빠른 속도로 북한 사회에 확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주택을 거래하는 암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사적인 경제활동의 확대 등을 계기로 부를 축적한 신부유층에서 넓고 좋은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북한의 주택 암시장이 활성화

¹¹⁰ 이시마루 지로, “시장의 힘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을 추적하라,” 『NK Vision』 7·8월호 (서울: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 2008), pp. 16~26.

I
II
III
IV
V

화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권력층과 고급간부들 사이에서 고급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세하면서 고급주택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위치가 좋은 주택의 거래가격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¹¹¹ 또한 주택가격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에서는 투자 차원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암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¹¹² 당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택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반해 구매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 주요 사례분석

일반인이 주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국 주택배정과에서 국가살림집 리용허가증(입사증) 발급받아야 하는데 심사결과에 따라서 배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주택이용자의 자격 심사는 출신성분, 거주등록 자격, 직업, 혼인관계, 가족 혁명화 정도, 정치사상 생활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주택을 교환하기 위해서도 절차가 필요한데, 우선은 교

¹¹¹- 최근 몇 년 동안 평양을 비롯한 신의주와 평성 등지에는 개인부동산업을 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¹¹²- 『열린북한방송』, 2009년 5월 11일.

환하고자 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하며, 각자의 해당기관에 제기하여 동의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형식은 교환이지만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때 거쳐야 하는 신규 입주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 주택 거래과정¹¹³

북한에서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판매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식적인 구매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암시장에서 주택이 거래될 경우, 구매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다양한 조건들을 요구하게 된다.

세 번째는 흥정과 거래의 과정이다. 처음에는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교환한 상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양자간의 흥정을 통해서 구두로 거래가격에 대해 합의를 한다. 1차 가격 합의 후 명의 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금액을 치루는 상황에서 가격에 대한 재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처음의 정보와 다른 사실이 발견되거나, 추가적으로 주택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구매자는 금액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이 법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거래가 끝난 뒤에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보니 집값을 너무 비싸게 주었다든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러한 분쟁

¹¹³ 류경원, “주택거래와 그 부정부패의 내막,” 『립진강』 3호 (2008.8), pp. 6~46.

I
II
III
IV
V

이 폭행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택매매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면한다고 한다. 또한 대체로 구매자의 편을 들어 매듭을 짓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주택이용허가 신청서 발급 과정>

- 우선적으로, 구역의 주택배정과에서 주택 리용허가 신청서를 발급받음.
 - 신청서에 보안서 공민등록과의 거주 승인도장 취득(해당 과에서는 직업, 가족상황 등을 포함한 본인의 거주 자격을 확인한 후 승인)
 - 구역 보위부의 거주 승인도장 취득(인민보안성 공민등록국의 주민등록부와 확인대조 후 승인)
 - 건물관리기관의 승인(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의 기술적 안전상태 확인)
 - 건물의 해당지역의 인민반 반장의 승인 도장 취득
 - 해당지역의 동 사무소의 사무장 승인 도장 취득
 - 주택 리용허가 신청서를 구역의 주택배정과에 제출하여 접수함.
 - 신청문건을 구역 도시경영부가 심의, 승인
 - 신청문건을 구역 건설 부위원장이 심의, 승인
 - 신청문건을 도(직할시) 도시경영국 건설 부위원장이 심의, 승인

*** 주택 거간군, 일명 ‘집데꼬’의 역할:**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거래를 증계하는 사람(거간군)이 생겨났는데, 이 거간군들은 보통 여럿이 한 조를 형성하여 움직인다. 거간군들은 입사증 취득에 필요한 복잡한 수속을 대행해준다고 한다. 이들 중에서 우두머리는 주택과나 보안서, 재판소에 연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거간군들은 정보의 전달에서부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다.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10% 수준(여기에는 입사증 수속에 소요되

는 비용(2005년 기준 5~7만원)이 포함되어 있다)으로 상당히 높다고 한다.¹¹⁴

*** 가격 결정구조 :** 주택의 거래가격은 시장의 거래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상 및 흥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교통의 편리성, 장마당과의 거리 및 장사 관련 편의성, 수도 및 전력공급 조건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부차적으로는 건물의 견고성, 내부구조, 텃밭의 크기, 인민반 주민의 구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나) 개인적인 부동산사업 추진 과정

북한에서 부동산사업, 즉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양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과 주거 환경이 좋은 부지를 물색한다. 이후 아파트를 건설할 명분을 제공해줄 적절한 기업소를 선정하여 구두 계약을 체결한다.¹¹⁵

국토환경관리부(토지관리처)에 기업소 명의로 토지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국토환경관리부가 책정한 해당 토지의 구입비용을 납부하고 허가증을 교부받는다.

이후 부동산사업자는 국가기관인 건설사업소에 가서 적정한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¹¹⁴ 이처럼 거래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와 담합, 뇌주기 등이 이루어지며, 권력 계층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맡본색원하기가 어려운 것이 북한의 실정이다.

¹¹⁵ 이 단계에서는 아파트를 특정 기업소 종업원용으로 위장하여 건물을 세우고, 완공된 이후에는 외부의 입주 예정자(사전 분양자)들이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기업소의 책임자에게 일정 수준의 대가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I
II
III
IV
V

에서는 건설현장에 동원할 근로자의 수와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소 책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고 한다.¹¹⁶

건설사업소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업자는 건축물의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설계사업소에 의뢰하여 작업을 하는데 부실한 경우가 많아서 2004년부터는 개인 설계사에게 부탁하여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¹¹⁷

건설작업이 진행되면 건축 자재와 설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품목에 따라 해당 기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장마당에서 직접 구입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자재들은 주변의 기관이나 기업소의 창고를 빌려서 몰래 보관한다고 한다.

- 시멘트: 시멘트 공장과 직접 거래
- 모래: 항구 등 현장에 가서 계약체결
- 철강: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다른 기관의 창고에 몰래 보관
- 목재: 장마당에서 구입
- 차량: 차량관리국 소속 운전자(개인사업을 하는)를 개별적으로 채용

건물 완공 후 건물의 일정 비율은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야기될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도 한다고 하는데, 평양의 대동강 구역에 10층짜리 아파트 수개 동을 지은 사례에서는 가장 노른자위라고

¹¹⁶ 건설사업소에 소속된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파견된 노동자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등 통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는 개인 사업자가 비공식 ‘인력시장’을 통해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등장했다고 한다.

¹¹⁷ 2006~2007년 기준으로 해주시에서 개인이 설계를 해주는 경우 비용은 300달러 수준이었다고 한다.

할 수 있는 3층에서 7층까지는 개인들에게 분양해서 건축자금과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국가에 바치기로 했다고 한다.¹¹⁸

자금의 조달을 위해 ‘돈주’들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기초공사 후 사전분양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거나, 건물을 완공하고 난 이후 분양하기도 한다.¹¹⁹

(3) 국가의 공식경제부문과 비공식경제부문의 관계

□ 거래시장은 독립적, 건설시장은 보완적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으로 암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거래시장과 건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기존에 건설된 주택이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경우에는 편법과 불법적인 요소가 동원되기는 하지만 정부의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고, 사적인 부동산 거래가 국가부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동산 건설시장은 제한된 지역에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국가의 건설사업 수행능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국가건설부분에서 부여 받은 주택건설 목표를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재정능력이 있는 개인과 사업적으로 연계하거나 개인의 주택수요를 이용해서 국가로부터 주어질 주택건설에 필요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드물게는 개인사업의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 기획되고 건

¹¹⁸ 한영진, “북한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돈주,’” 『NK Vision』 7·8월호 (서울: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 2008), p. 34.

¹¹⁹ 북한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테리어를 해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집안 인테리어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한다.

I
II
III
IV
V

설물량의 일부는 국가에 바치기도 하지만 개인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비공식적인 건설시장도 때로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 자본(금융)시장

(1) 시장의 형성 실태와 주요 특징

북한에서는 자본시장을 “자본주의 나라에서 자본가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며 보다 많은 리윤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설비의 신설, 확장 및 갱신을 위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⁰ 따라서 자본시장은 고정자본의 증가를 위해 필요한 장기자금을 유통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금융시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자본가와 기능자본가사이에 화폐자본의 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소유와 경영간의 분리를 토대로 하여 발생한 화폐자본시장”으로, 화폐자본의 거래관계를 표현하는 경제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돈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금융시장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북한의 인식에 기초할 경우, 자본시장보다는 금융시장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함께 새롭게 형성된 계층 중의 하나가 자금주(일명, ‘돈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소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

¹²⁰-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p. 214.

고 이자를 받는 사금융행위를 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국가에서 공급해주던 생필품의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자 개인들이 원자재를 구해서 몇 가지 조악한 수준의 제조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서 몇몇 개인들은 소규모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사적으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생산품의 종류가 확대되었으며, 신흥자본가들은 사채업, 유통, 부동산, 교통운수, 무역업 등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개인들의 시장을 통한 활동영역이 빠르게 증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자금 규모도 함께 확대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과의 무역활동이 자유화되면서 외화벌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외화벌이를 통해서 부를 쌓긴 사람들은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시장장려조치’를 전후하여 시장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거의 없어진 상태를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자금력을 가진 이들 ‘돈주’들이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참여하면서 북한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당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열사업 등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이를 이유로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주요 권력기관들 대부분이 ‘돈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단속이나 전면적인 통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주들은 국가의 은행이 수행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대출업무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금융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주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공장·기업소 및 협동

I
II
III
IV
V

단체 등에 자금을 빌려주거나¹²¹ 직접적으로 이들과 연계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장사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20~30%/월)로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북한에서 사채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사채업이 형성된 초기단계에서는 사적인 인연을 매개로 별다른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점차 돈을 갚지 않은 사례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재산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한 이후에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¹²² 사채업자들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해결사’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³

북한의 사금융시장의 특징은 협소한 북한경제의 시장상황 때문에 대부업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채업만으로는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무에만 국한해서 보면, 북한의 사금융시장은 매우 조악하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사금융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돈주’들은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산활동이나 투자활동에까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진출한 주요 부문으로

121. 함경북도 길주군 남양농장관리위원장이 돈주들에게 빌린 자금과 농장자금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유용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돈주들은 매일같이 관리위원장의 집으로 몰려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고 한다.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77호, p. 7.

122. H씨(여, 청진에서 장사, 2004년 탈북) 인터뷰(2009.9.10).

123.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를 갚지 못하면, ‘해결사’가 나타나 집에서 강제로 퇴거시켜 팔거나 따라다니면서 채무를 갚도록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한영진, “북한경제의 보이지 않은 손 ‘돈주,’” p. 33.

는 아파트를 건설해서 개인들에게 분양하는 부동산사업으로 포함해서, 도매업, 식량 투기(사재기), 운수사업 등을 들 수 있다.

(2) 정부의 통제

최근 북한당국은 고리대금업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자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신의주와 함경북도 등지에서는 인민보안성이 화교와 ‘재포’(재일동포 귀국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전국 보안원들에게 전달된 『고리대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문에서 따르면, “빛을 갇지 못한다는 이유로 살림도구와 집까지 빼앗는 잔인한 행위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고리대 현상’들과 전면전을 벌려 “인간의 양심을 팔아 더러운 이속을 채우려는 자들에 대해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지역에서 “2000년대 이후 꽃제비 짓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를 하다가 망했거나 빚쟁이들에게 집을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국에 친척이 있는 화교들과 일본에 친척이 있는 재일동포 귀국자들이라고 한다. 이들 고리대금업자들은 대부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기한 내 빛을 갚지 못할 경우 ‘해결사’를 동원해서 채무자들의 집을 빼앗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돈으로 권력기관의 중간간부들을 매수하고 있어 국가기관에서도 그동안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¹²⁴

¹²⁴. 『The Daily NK』, “북 쩐의 전쟁 한창 …,” 2009년 9월 20일.

I
II
III
IV
V

(3) 국가의 공식경제부문과 비공식경제부문의 관계

□ 비공식부문이 공식경제부문의 자본 부족을 보완

장기적인 경제난으로 국가의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국가 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당국은 2002년 ‘7·1조치’를 통해서 기업의 자율성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국영기업의 부실을 더 이상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의 자금공급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산을 위한 자금동원을 위해서 사적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는 개인 자본가들이 기업소·공장에 일정한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기업소·공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는 비공식적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사적인 금융시장은 비공식적, 부분적으로 공식경제부문의 자금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공식부문의 자본시장이 공식부문의 부족한 자본을 보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사적 금융시장은 정부차원에서는 불법적이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사적인 자본시장의 발전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국가 공식경제부문의 시장 활용

□ 북한의 공식경제부문을 ‘내각경제’와 ‘특권경제’로 구분

지금까지의 논의는 국가의 공식경제부문과 민간의 비공식경제부문이 시장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양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공식경제부문은 내각의 계획경제와 다른 공식경제부문(당과 군수부문)의 작동원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시장을 통한 민간의 비공식경제부문과의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의 공식부문을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논점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북한경제를 내각경제, 군수경제, 당경제 그리고 인민경제(또는 주민경제나 비공식경제 등으로 명칭)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공식경제부문 중에서 군수경제 및 당경제가 내각경제와 분리된 상태에서 김정일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통치행위를 뒷받침하기위해 별도의 예산편성, 생산 및 분배, 그리고 무역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궁정경제’, ‘수령경제’ 등으로 표현하고, 그 특성이 분석되고 있다.¹²⁵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의 공식부문과 민간경제의 비공식부문이 어떻게 시장활동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각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당경제와 군수경제를 합하여 ‘특권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당과 군

¹²⁵ 김광진, “김정일의 궁정경제와 인민경제의 파괴,” 『시대정신』 여름호 (2008);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 (서울: 시대정신, 2005), pp. 58~71.

I
II
III
IV
V

수부문의 경제활동을 누가 최종적으로 통제하고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부문의 경제가 국가의 제한된 자원의 사용과 외국과의 무역 할당량을 받는데 있어서, 그리고 시장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이 민간부문의 비공식경제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활동을 통한 민간의 비공식경제부문의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당경제와 군수경제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가. 내각경제부문의 시장 활용 방식

(1) 내각경제 기업들의 생존 전략

2002년 ‘경제관리체계개선조치(7·1조치)’ 이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계획지표가 기존의 양적인 현물계획지표와 함께 금액계획(‘액상계획’)지표가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원자재와 필요한 재정자금을 보장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종업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자금이 없는 기업소·공장들은 일차적으로 기업소·공장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기업소·공장으로서의 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소·공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종업원들에게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고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8·3노동자’라고 한다.

둘째,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공장 내에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갖추어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기업의 명목과 건물, 인력 및 전력 등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은 생산 이익의 일부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수입을 챙기는 것이다.

셋째, 개인 투자자가 공장의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시장에 판매할 물건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도록 허용하고 이윤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개인 투자자가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이중에서도 첫째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형태만 유지하는 상태가 되고 개인 자본가에 대한 의존이 커지게 됨에 따라 개인 자본가에 휘둘리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사회주의검열’을 통해서 기업활동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7·1조치’ 이후에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보강하여 본격적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물건을 만드는 방식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들이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I
II
III
IV
V

(2) 시장 참여 사례 분석

(가) ○○철도국 전기통신대¹²⁶

1980년대 중반부터 월급과 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7·1조치’ 이후 자체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지침이 하달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대에서는 부업반을 꾸려 소형변압기를 생산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 조립 수준이었으나 점차 설비를 보강하여 부품들을 생산하거나 조립과정을 현대화하였다. 소형 변압기는 주로 시장에서 판매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특혜적으로 배정 받은 화물 열차(빵통)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임대만 해 주었으나 점차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국경지역(신의주)으로 화물열차를 가져가서 시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실어와서 도매로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화물열차 1개로 시작했지만 점차 수량을 늘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자들과 부분적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물건(40톤 정도)을 확보한 뒤에 화물열차를 임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기업들이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에 참여했던 개인 투자자들과 기업책임자 사이에 갈등도 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자 시장에서 개인들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영기업

¹²⁶- K씨(남, 40대, 함흥시 출신, 2005년 탈북) 인터뷰(2009.9.9).

들의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나) ○○금속건설 연합기업소¹²⁷

종업원 3만 명으로 구성된 연합기업소로, 건설사업, 자동차 생산, 설비 생산 등을 중심을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다 종업원의 월급과 배급을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하게 되었는데, ‘8·3노동자’ 허용, 해외로 인력 수출, 개인에게 명의 제공, 그리고 기업소 내에 있던 산하의 다양한 직장(17개)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원래 종업원들의 수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수산기지’의 경우, 크고 작은 어선 30여척 중에서 일부는 기업소가 직접 관리하여 고기를 잡고 일부는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온실직장’은 원래 종업원들의 부식품 조달을 위해 운영되었지만 최근에는 시장에 판매할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용역팀’에서는 개인 집의 인테리어작업을 시행해주고 수익을 거둔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문은 기업소의 책임자에게 온다고 한다. 그러면 해당 책임자는 팀을 꾸려서 작업을 수행토록 지시하는데 이 작업은 완전히 사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건설사업은 지방이 추진하는 ‘지방대상건설’사업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상건설’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적으로 건설대상이 결정되어서 추진되는 ‘국가대상건설’사업은 시멘트와 철강과 같은 건

¹²⁷ J씨(남, 40대, 청진시 출신, 2007년 탈북) 인터뷰(2009.9.9).

I
II
III
IV
V

자재 공급과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식량배급 및 부식까지 국가가 보장 해주고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TV와 같은 선물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공사에 사용되었던 중장비가 해당 기업소에 남겨지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다고 한다. 반면에 ‘지방대상건설’은 국가대상건설과 같은 혜택이 없고 전자재 조달도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끼리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나. ‘특권경제’ 부문의 외화벌이사업

북한에서 당과 군수부문의 경제활동이 내각부문과는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분리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²⁸ 즉, 기존의 내각경제에 포함되어 있던 군수경제부문을 1972년 ‘제2경제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독립시키면서 군수경제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데¹²⁹ 이어, 1974년 2월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주요 무역부문을 주요 자금원으로 관리하는 당경제를 형성하면서 ‘특권경제’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한 것이다.¹³⁰

이때부터 ‘특권경제’는 김정일의 후계체계 구축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고, ‘특권경제’의 권력자 금고로서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권경제’가 내각경제의 주요 소득원들을 흡수하면서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기 때문이다.

128- 이 부문에 대한 설명은 김광진 앞의 글을 참조하였다.

129- 계획, 생산, 분배 및 무역과 금융부문까지를 망라함으로써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30- 정광민, “조선노동당 ‘당경제’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참조.

(1) ‘특권경제’ 부문 외화벌이사업의 주요 특징

이러한 ‘특권경제’의 특징은 첫째,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당과 군부의 소수 특권계층의 배타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내각경제의 관리체계와는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내각경제는 주요 소득원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전력, 운송, 식량 등의 기초부문의 생산 중에서 특권경제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특권경제의 내각경제에 대한 거의 일방적인 수탈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셋째, ‘특권경제’의 주 수입원은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벌이사업이다. 이를 위해 외화벌이가 되는 대부분의 생산기관, 기업소는 대부분 특권경제가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¹

‘특권경제’가 이처럼 국가의 중요 자산을 흡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으며, 상호적인 연계관계도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특권경제’는 기형적으로 국가경제를 황폐화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파산은 ‘특권경제’의 존재와 이에 따른 기형적 경제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문이나 정권차원에서의 홍보를 위해 특정 사업을 위한 자금(소위, ‘혁명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를 통해서 ‘특권경제’의 자금이 내각경제부문에 투입되는 사례를 드물게 발견할 수는 있다.

¹³¹ 특권경제 부문은 북한의 금광, 은광, 아연광과 제련소들을 대부분 산하기관으로 끌어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급어족과 송이버섯 등의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외화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호텔, 대도시의 외화상점 및 외화식당 등 서비스·유통 부문은 물론, 목장, 농장, 가구공장, 식료품공장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
II
III
IV
V

□ 지속적 팽창과 내각경제의 침식

북한의 ‘특권경제’가 외화벌이사업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현상은, 1970년대 나타난 북한경제의 외화난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서방권 국가로부터의 외채도입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시도했지만, 외화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의 노출과 석유파동에 따른 국제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외채를 갚지 못하게 되어 채무불이행사태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환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통치자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외환을 관리하는 별도의 주머니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북한에서 ‘특권경제’ 부문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영역이 팽창되어왔는데, 이러한 양적 성장과정은 주요 외화벌이사업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권경제’의 외화벌이사업이 일반주민들의 시장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북한주민들을 동원한 외화벌이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운동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초, 김일성 환갑생일을 맞아 노동당이 ‘충성의 외화벌이 운동’을 촉구하면서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중앙당 재정경리부가 외화벌이 운동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970년대 말 외화벌이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면서 관련 부서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화벌이 관련 기관들이 증가하면서 외화벌이 기관들도 다양화, 전문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당 ‘39호실’은 대성총국과 같은 여러 형태의 외화벌이 기구를 거느리고 전문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39호실’은 산하에 ‘5호관리부’를 두고 있으며, ‘5호관리부’는 각 시·군의 기관, 기업소·공장, 협동농장 등의 당조직을 동원해 과제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외화벌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² ‘5호관리부’는 이외에도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동원하여 채취된 사금, 송이버섯이나 약초 및 산나물 등을 수집하거나 때로는 사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5호관리부’는 기관, 기업소·공장, 협동농장들과 일반 주민들에 대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외화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외화별이 과제를 수행한 정도에 따라 외국에 수입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주민들은 외화상점에서 외국상품을 구입하면 이것을 장마당에 가지고 가서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당경제와 함께 ‘특권경제’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는 군수경제부문의 외화별이사업으로 중요한 부분은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들의 외화별이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무력부가 외화별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1984년 경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인민군대의 강화와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로 생산, 확보하는 원칙을 세울 데 대한 방침》이 하달된 이후라고 한다.

여기에 1990년대에 들어 북한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북한 전역의 기업소와 공장이 대부분 가동을 중단하다시피 하면서 외화별이사업은 내각경제부문까지 가세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1992년에 발표된 ‘새로운 무역체제’를 통해서 대외무역 권한이 지방 단위에 이양되었고 생산자가 자체 계획을 세워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중앙은 물론 지방의 국가기관, 기업소·공장 등도 외화별이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화 소득원이 있는 지방에는 경쟁적으로 전문외화별이기관이 설립되어 제한된 외화 소득원

¹³² 이주일, “북한의 주민 동원 외화별이 실태,” 『Keys』 제34호 (2003.5), pp. 24~42를 참조하였다.

I
II
III
IV
V

을 놓고 과열 경쟁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실속있는 ‘알짜배기’ 사업들은 특권경제 산하의 외화벌이 사업소들이 대부분 차지하게 된다.

(2) 비공식경제부문과의 관계

특권경제의 외화벌이사업은 크게 3가지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앙당 ‘39호실’이 ‘5호관리부’를 통해서 각 기관, 기업소·공장 등에 과제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당차원의 외화벌이 과제가 계속 부과되자 해당 기관에서는 외화벌이 과제만을 전담하는 ‘외화벌이 작업조’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둘째는, 외화벌이 사업소를 설치하여 수매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채취한 임산물 등을 수매하는 방식이다. 송이버섯의 채취가 대표적인 수매 대상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체 생산기지를 건설해 놓고 수출 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각종 광산이나 수산사업소 등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위 3가지 방식을 통해서 특권경제는 민간의 비공식경제부문과 연결되어 있다. 첫째, 강제적으로 기관이나 직장단위로 과제를 할당되고 다시 구성원들에게 다시 할당되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시장을 통해서 과제에 해당되는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의 방식은 개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화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유인을 제공하고, 외화상점을 통해서 수입품을 확보한 개인은 이를 장마당에서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세 번째 방식을 통한 비공식부문과의 관계는 규모가 크고 구조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내부적인 거래를 통해서 자본동원 능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외화벌이사업소

의 명의를 빌려 사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수산물수출사업소가 잘 알려진 사례이다.

□ 주: 일방적 탈취관계, 부: 공생적 의존관계

북한의 ‘특권경제’ 부문은 강력한 권력과 특혜를 바탕으로 민간의 비공식경제부문을 일방적으로 탈취하는 기생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화벌이 과제를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일방적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970년대 외화벌이사업 초기에는 주민들이 국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했던 단계도 있었다고 한다.

부차적으로는 민간부문이 ‘특권경제’와의 비공식·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산물 채취에 참여하여 외화상점 이용권을 획득하거나, ‘특권경제’ 산하 외화벌이사업소의 명의를 임대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북한경제의 파탄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특권경제’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도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나, 외화벌이사업 영역의 지나친 팽창과 시장을 무대로 하는 개인사업의 확대 현상이 맞물려 공생적인 관계가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

II

III

IV

V

V. 종합 결론: 북한 시장화 현상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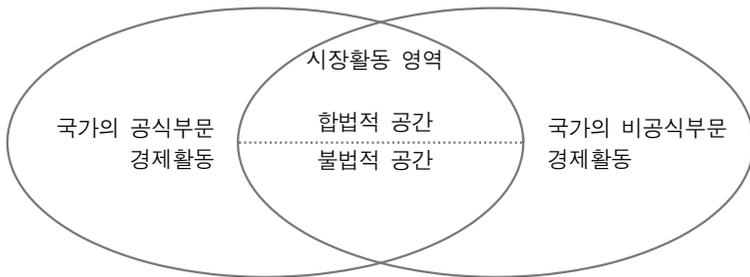


1. 북한 시장화 현상의 구조적 특징

가. 국가의 공식경제부문과 민간의 비공식경제부문과의 관계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은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장화 현상이 나타나는 영역을 전문시장(소비재 상품, 생산재, 노동력, 주택, 자본 등)영역별로 구분하여, 시장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공식경제부문과 민간의 비공식경제부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 국가의 공식부문과 민간의 비공식부문과의 관계



- (1) 합법적 공간은 공생적 협력관계, 불법 공간에서는 경쟁적 기생관계

시장이라는 물리적·추상적 공간을 중심으로 사고할 경우, 국가의 공식부문과 민간의 비공식부문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합법적 공간을 통해서도 상호 협력

적·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경제난의 심화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의 경제관리체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공장, 협동농장 들에게 ‘자력갱생’을 요구하면서 약간의 자율적인 공간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공식 부문이 시장활동을 통해서 민간의 비공식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비합법적인 공간을 통한 양자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권한을 가진 국가 공식부문을 중심으로 거의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생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식부문 쪽에서는 국가 권력을 내세워 뇌물을 수취하거나 경제활동 관련 권한을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에, 민간의 비공식부문에서는 국가자산의 절도 및 뇌물 제공과 국가기관의 명의 도용 등을 통해서 사적인 경제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국가는 시장을 적절하게 활용하되, 시장화 현상의 확산은 경계

시장의 합법적 공간이 작동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은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중단된 기관, 기업소·공장 등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차원에서는 시장영역을 활용함으로써 취약한 재정기반에 따른 문제점을 임시적·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부작용(?)이 증가한 점은 북한 당국에 부담이자 고민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시장을 통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장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부유층의 부각과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요소가 증폭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의 영역 및 기능의 확대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지도부 내에서는 시장에 대한 통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노력은 시장화 현상의 지나친 확산을 제어함으로써 통제권 내에 두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국가분배체계를 복원할 수 있을 수준으로 경제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시장에 의존해 생계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내각경제, 특권경제 그리고 민간(비공식)경제의 상호 관계

(1) 부문별 주요 특성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의 공식경제부문을 ‘특권경제’ 부문과 ‘내각경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어떻게 시장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민간의 비공식부문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보다 종합적·입체적으로 분

I
II
III
IV
V

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을 적용해 북한경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는 2가지 새로운 관점은 경제의 각 부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첫째가 자원사용의 측면이고, 둘째는 국가배급체계 외해에 대한 대응 방식의 측면이다.

(가) 국가자원 사용 권한의 편중

자원사용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경제부문별 주요 특징은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특권경제’ 부문이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민간의 경제생활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 경제생활까지 챙겨야 하는 내각경제는 피폐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각경제의 파탄은 경제적 연계성과 정치적 책임성이 결여된 ‘특권경제’ 부문이 국가의 자원을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경제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공장들이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특권경제’ 부문은 내각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요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내각경제 부문에서의 생산성과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내각경제 부문을 침식해왔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자원을 독점한 ‘특권경제’ 부문은 외화취득을 통한 자금 확보에 경제활동의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그에 따라 배타적인 특권을 이용한 외화벌이사업에 몰두해 왔다. 이에 따라 내각경제 부문에서는

남겨진 자원을 동원해서 수출하고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서 경제를 꾸려야 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외화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내각경제부문이 시장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민간의 비공식경제부문에서도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특권경제’ 및 ‘내각경제’의 외화별이사업에 협조하거나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생계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국가 배급체제의 와해에 대한 대처 방식의 차이

북한의 공식경제부문에서 시장화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국가의 배분체계가 붕괴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식부문의 기관 및 기업소·공장 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룹이다. 시장을 활용할 능력도, 힘도 없는 기관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기관들의 구성원들은 집안의 가재도구를 내다팔아서 생계를 해결하였으며 이도 못하는 경우에는 앉아서 아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둘째는 자체의 힘과 능력으로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관공급’을 하는 그룹이다. ‘기관공급’이란, 특정 기관이 자체적, 집단적으로 그 기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외화별이사업이나 ‘쌀실이’ 등이 대표적인 활동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특권경제’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공장들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각개약진의 방식으로 시장을 활용하여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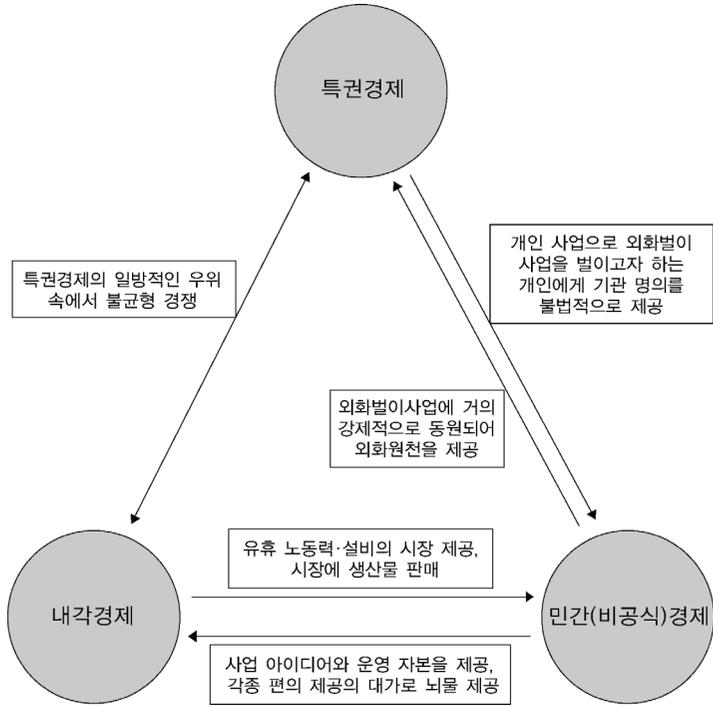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기관단위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능력과 힘이 없는 기관들이 속해 있어, 회사의 목인이나 허용 하에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국가 배분의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한다.

여기에 일반주민들의 경우에는 경제난 초기, 대부분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점차 생존을 위해 시장활동에 참여하면서 세 번째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시장에서의 개인장사 등을 통해서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극히 소수는 시장에서의 개인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여 새로운 부유층으로 성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부문별 상호 관계가 시장화에 미치는 영향

북한경제에 3자 간의 관계가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아래의 그림에서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경제를 구성하는 3개 경제부문은 ‘특권경제’가 타 경제부문에 대해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수탈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기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V-2 시장을 통한 내각경제, 특권경제, 민간경제의 상호 관계



시장을 통해서 부문별 경제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내각경제부문과 민간경제부문의 관계가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특권경제 부문과 민간경제부문의 관계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특권경제부문과 내각경제부문 간에는 국가의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시장을 통한 관계는 거의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
II
III
IV
V

(가) 내각경제와 민간경제의 협력적 공생관계는 시장 활성화의
핵심 동력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비공식경제(민간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 국가로부터 배급도 받지 못하고, 경영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자금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 기업소·공장 등이 생존과 명맥 유지를 위해 시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시장화 현상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각경제와 민간경제는 시장을 통해서 상호간에 협력적인 의존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생적 협력관계가 북한경제 시장화 현상의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특권경제와 민간경제의 기생적 의존관계는 시장 활성화의
촉진제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빠르게 확산된 이면에는 북한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과 관련된 특권을 무기로 외화벌이사업을 추진하는 특권경제부문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경제는 특권경제부문이 가지고 있는 경제 권력에 기생하는 형태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제부문은 특권경제의 외화벌이 사업에 협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특권경제’ 부문은 기본적으로는 폐쇄적·배타적인 경제운용을 통해서 민간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민간경제의 황폐화에 원초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자의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민간경제부문에 수입 상품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권경제부문의 외화별이사업에 민간부문을 비합법적·제한적으로 참여시키거나, 특권경제부문을 통해 수입된 물품들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식 등으로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내각경제와 특권경제의 관계는 시장화 현상과는 대체로 독립적

국가의 공식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특권경제와 내각경제는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관계는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가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미친 영향은 거의 무시할만한 정도라고 평가된다.

다만, 1990년대 초반 이후 내각경제부문에서도 자체적인 외화별이사업장을 꾸리고 독자적으로 대외무역을 추진해 오면서 외화별이 수입원을 놓고 특권경제부문과 ‘제한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한적이라는 의미는 특권경제부문이 주요 외화수입원을 독차지한 가운데 내각경제부문은 ‘먹을거리가 적은’ 부문을 가지고 외화별이에 나서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자한 것이다. 외화별이사업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촉진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화별이사업을 통한 내각경제와 특권경제의 제한적인 경쟁관계는 어느 정도 북한의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부분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2. 향후 전망

가.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1) 확산 요인

(가) 시장을 대체할 대안의 부재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이 확대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국가가 일반주민들에게 식량 및 주요 생필품의 공급을 보장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각경제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공장 심지어는 협동농장까지 생계문제의 해결 및 기관의 자력갱생 차원에서 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이 감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붕괴된 북한경제의 생산체계가 회복되고 마비된 기존의 국가 배급 및 공급체계가 복원되기 전까지는 북한당국의 시장 통제 노력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건은 북한당국의 경제회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회의적이라고 하겠다.

(나) 주민들의 시장에 적응하는 능력 증대

국가가 일반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이 장기화하면서, 시장시스템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효과를 통한 시장 적응능력의 향상이 시장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국가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식량난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시장활동에 뛰어든 사람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수는 부를 축적하여 신흥부유층으로 성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경제활동에 적응한 사람을 중심으로 북한사회가 재구성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주민들의 시장에 대한 적응 능력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모든 해결해야 한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 “모든 것은 거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등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활동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의 특화, 전문화

북한에서 시장활동이 증대되면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가 활동영역의 전문화 및 특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재 상품, 원자재, 인력 거래 및 금융상품 등으로 영역별로 전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취급한 상인들도 식료품, 의류제품, 화학제품, 전자재, 플라스틱제품 등으로 특정 상품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순 가내수공업에서 집에 공장을 꾸리거나 기업소·공장의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기계형 공장수공업으로 대량생산체계가 도입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활동의 전문화, 특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활동을 통한 사적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시장활동의 공식부문에 대한 경쟁력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I

II

III

IV

V

(라) 시장 운영시스템의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물물교환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시장활동이 확대 발전하면서 점차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작동체계의 발전은 유통체계의 전문화·체계화 현상과 신용거래의 정착 등이 주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돈주와 도매상을 시작으로 소매상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시장활동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신용거래의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관련 정보의 유통속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현상도 시장 운영시스템이 체계화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도매상 중에서도 ‘큰 손’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식량가격과 환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시장의 동향에 대한 정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 국가의 각종 기관들의 시장활동에 대한 의존도 증가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확대된 이면에는 국가기관들의 직접적인 참여 및 해당 기관 종업원들의 개별적인 시장활동 허용 조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들이 종업원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거나 기관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종업원들이 시장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해

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일정 금액을 납부토록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편법적인 거래와 뒷거래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국가 권력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시장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억제 요인

(가) 북한 지도부의 거부감

북한 시장화 현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당국의 시장 확산 현상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화 현상의 확산에 대해 북한당국에 갖는 우려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 사이에 개인주의적 사상이 확산되면서 일반주민들의 체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가의 사회 통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시장활동을 통해서 탄생한 신흥 부유층의 호화생활 등이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활동을 둘러싼 권력기관 및 인허가 관련 관료들의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된 현상도 체제의 취약성을 노출시킨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활동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을 위해서 공식경제부문의 노동력이 이탈하는 현상이 공식부문의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에 장애요인이라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I
II
III
IV
V

(나) 시장활동의 비합법적 영역의 증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소는 아직까지 시장활동을 제도적·법적으로 보장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시장활동이 충분하게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묵인 하에서 시장을 통해서 비합법적인 형태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거래의 금지품목을 증가시키고, 시장의 개장시간의 축소, 시장 매대 사용 조건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당국의 행태는 시장활동의 합법적 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시장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 빈부 격차의 심화

시장활동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이 당면한 생계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을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이 빈부 격차의 심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특권계층에 속한 고위관료나 권력기관 및 외화별이사업 등에 소속된 사람, 그리고 소수의 성공한 상인계층은 부유층을 형성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반면에,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의 편향된 재분배 현상은 시장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북한경제의 시장화 전망

(1) 단기적 전망

(가)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 노력 지속

북한당국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시장활동을 위축시켜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시키려는 당국의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의 시장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현재의 구조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국내외 상황이 개선되어 당국의 공급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시장의 폐쇄와 같은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 노력은 일차적으로 내부 경제 상황과 대외무역, 외부의 경제지원 등을 통한 공급능력의 확보 정도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의 불투명성, 자체적인 경제회생 가능성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국가 차원의 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국의 시장 통제 의지가 제대로 실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음성적 시장활동의 확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 노력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당국이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은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시장활동의

I

II

III

IV

V

비합법적인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시장활동을 불법화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시장활동을 위축시키려고 시도할 경우, 시장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부를 축적해 왔던 그룹들은 시장활동의 음성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암시장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암시장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기생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던 부패한 관료들에게는 부정부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줄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 대한 단속과 통제의 강화는 일반주민들의 시장활동을 통한 생계문제 해결 노력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국지적인 반발 및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중장기 전망

(가) 시장에 대한 통제와 허용을 반복

북한당국이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시장통제에 대해 북한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외부의 자원 조달을 위해 필요한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시장에 대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시장의 확산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 시장을 통제할 필요성은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체제 안정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고, 또 강화하는 조

치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개혁 압력이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것이 북한 경제 체제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 시장의 제도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북한체제가 붕괴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대내외 환경 및 상황 변화를 계기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다 전격적인 형태로 경제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과 시장활동의 제도화·합법화 등의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의 계획체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시장의 기능이 공식적으로 점차 더 강조되고, 계획 기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국가의 거시적 경제조정 작업은 계속되는 상태에서 시장이 자원배분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¹³³

¹³³ 계획경제체제에 시장경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도입된 사례로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작업을 꼽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외교통상부. 『쿠바개황』.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임강택 외.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 서울: 시대
정신, 2005.
-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Holmes, Leslie. *The End of Communist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Kraus, W.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ew york: Springer-Verlag,
1982.
- Pérez-López, Jorge F.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New Brunswick (U.S.A.)
and London (U.K): Transaction Publishers, 1994.
- Prybyla, J. S. *Market and Plan under Socialism*.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7.
- Yang, T. O, Q. Cua and y. Lei. *Serious Crimes in the Economic
Field*. Beijing: Law Press, 1984.

2. 논문

곽재성. “1990년대 쿠바의 개혁과 대외개방.”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15권 2호, 2002.

김광진. “김정일의 공정경제와 인민경제의 파괴.” 『시대정신』. 여름호, 2008.

류경원. “주택거래와 그 부정부패의 내막.” 『립진강』. 3호, 2008.

리장희.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류통영역에 대한 주체적 견해.” 『경제연구』. 2002년 1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손혜민. “박기원 그 순천사람.” 『립진강』. 5호, 2009.

이시마루 지로. “시장의 힘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을 추적하라.” 『NK Vision』. 서울: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 7·8월호, 2008.

이주일. “북한의 주민 동원 외화벌이 실태.” 『Keys』. 제34호, 2003.

정광민. “조선노동당 ‘당경제’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시대정신』. 가을호, 2008.

정정길·전창곤.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 분석.” 『농촌경제』. 제23권 2호 여름호, 2000.

한영진. “북한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돈주’.” 『NK Vision』. 서울: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 7·8월호, 2008.

Altman, Yochanan. “Second economy activities in the USSR: insights from the southern republics.” Peter M. Ward (eds.) *Corruption, development, and inequality: soft touch or hard graft?* London: Routledge, 1989.

- Feldbrugge, F.J.M. "Government and Shadow Economy in the Soviet Union." *Soviet Studies*. Vol. XXXVI, No. 4, October 1984.
- Grossman, Gregory.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No. 26, September/October 1977.
- Liang, X. "The Rehabilitation of Collective Enterprises in Urban Areas." L. Wei and A. Chao, *China's Economic Reform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2.
- Łoś, Maria. "Dynamic Relationships of the First and Second Economies Old and New Marxist States." Maria Łoś (eds.)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London: Macmillan, 1990.
- Michalowski, Raymond J. and Marjorie S. Zatz. "The Cuban Second Economy in Perspective." Maria Łoś (eds.)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London: Macmillan, 1990.
- Ren, Xin. "The Second Economy in Socialist China." Maria Łoś (eds.)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London: Macmillan, 1990.
- Shelley, Louise I. "The Second Economy in the Soviet Union." Maria Łoś (eds.)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London: Macmillan, 1990.
- Treml, Vladimir and Michael Alexeev. "The Second Economy and the Destabilizing Effect of its Growth on the State

Economy in the Soviet Union: 1965-1989.” *Duke Economics Working Paper*. #95-33, p. 8 (www.econ.duke.edu/Papers/other/Treml/2ndecon.ps).

Wellisz, Stanislaw and Ronald Findlay. “Central planning and the ‘Second Economy’ in Soviet-type systems.” *The Economic Journal*. No. 96, September 1986.

3. 기타자료

『NK지식인연대』.

『NK Vision』.

『신동아』.

『열린북한방송』.

『오늘의 북한소식』.

『인민일보』.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이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공저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공저	
2009-15-02	북한 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공저	
2009-15-03	북한 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저	
2009-15-04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공저	
2009-15-05	북한 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저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공저	
2009-16-01	복합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저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저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저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공저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공저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저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공저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저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공저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7-01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인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rn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 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www.kinu.or.kr